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484-14

#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 용어 해설집

[www.mw.go.kr](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용어 해설집 (ㄱ~ㅅ)



### 제1장

#### ㄱ

가구원 .....	18	건강가정 .....	21
가공통계 .....	18	건강가정사업 .....	21
가산금 .....	18	건강가정지원센터 .....	21
가임기여성 .....	18	건강검진 .....	21
가정 .....	18	건강검진기관 .....	21
가정위탁 .....	18	건강검진자료 .....	21
가정의례 .....	18	건강기능식품 .....	21
가족생활만족도 .....	18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	21
가족친화 사회환경 .....	19	건강보험 가입자 .....	21
가족친화 인증제 .....	19	건강보험 부담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	19	건강보험 급여액 .....	22
가족친화 마을환경 .....	19	건강보험 사업장 .....	22
가족친화제도 .....	1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2
가족친화지수 .....	1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22
간호사 .....	19	건강보험 피부양자 .....	22
간호조무사 .....	19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23
감액노령연금 .....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23
개량신약 .....	20	건강보험증 .....	23
개별가구 .....	20	건강생활유지비 .....	23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20	검역 .....	23
개안수술 .....	20	검역전염병 .....	23
개인식별정보 .....	20	계몽프로젝트 .....	23
개인헌혈 및 단체헌혈 .....	20	결막·공막질환 .....	24
개장 .....	20	결손처분 .....	24
		결측치 .....	24

결핵	24	교육급여	28
결핵관리업무	24	교육적 선도	
결핵유병률	24	(예방적, 회복적) 지원	28
결혼이민자	24	구강보건산업	28
경제적 학대	24	구강보건용품	28
고령사회	24	구급차등	28
고령친화사업자	25	국고보조금	28
고령친화산업	25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28
고령친화제품등	25	국민건강보험	29
고령화사회	25	국민건강증진사업	29
고열량·저영양 식품	25	국민보건계정	29
고위험병원체	2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9
공공보건의료	25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지	
공공보건의료기관	25	최소 가입기간	29
공공보건포털	25	국민의료비	30
공공부조	25	군인연금	30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26	굴절이상	30
공공아이핀	26	근로빈곤층	30
공공차관	26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3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6	근로장려세제(EITC)	30
공무원연금	26	급성기 병상	30
공인인증서	26	급성전염병	31
공적연금 연계제도	26	급여정지	31
공적연금제도	27	급여제외목록	31
공적이전소득	27	급여제한	31
공제법	27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1
공중보건업무	27	기능성	31
공중보건 의사	27	기능성화장품	31
공중위생영업	27	기대여명	31
관세감축 방식	27	기등재의약품	31
관세환급	27	기본연금액	32
관심보건소	28	기부식품제공사업	32
광파일시스템	28	기생충질환	32



기준소득월액 ..... 32  
 기초노령연금 ..... 32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보조 ..... 33  
 기초노령연금 사전DB ..... 33  
 긴급복지지원제도 ..... 33

## L

납부예외제도 ..... 33  
 내부업무포털 ..... 34  
 넷북 ..... 34  
 노년부양비 ..... 34  
 노령연금 ..... 34  
 노숙인 ..... 34  
 노인돌봄서비스 ..... 34  
 노인복지시설 ..... 34  
 노인여가복지시설 ..... 34  
 노인의료복지시설 ..... 3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35  
 노인장기요양 ..... 35  
 노인주거복지시설 ..... 35  
 노인학대 ..... 35  
 노후상담설계(CSA) ..... 36  
 뇌사자 ..... 3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36  
 뇌사판정의료기관 ..... 36  
 누적기준 ..... 36

## C

다문화가족 .....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6  
 다층노후소득보장 ..... 36

당연적용사업장 ..... 37  
 대마 ..... 37  
 대체조제 ..... 37  
 대한민국 아동총회 ..... 37  
 델타확인 및 이중확인 ..... 37  
 독거노인 ..... 37  
 동물실험 ..... 37  
 동물실험 규범,  
 비임상시험 기준 ..... 38  
 동물실험시설 ..... 38  
 두드림존 ..... 38  
 드림스타트 ..... 38  
 등급외 A·B·C형 ..... 38  
 등록헌혈제 ..... 38  
 디딤씨앗통장 ..... 38

## R

롤업기준 ..... 38  
 리펀드제도 ..... 38

## Q

마약 ..... 39  
 마약류 ..... 39  
 만성질환 ..... 39  
 망막질환 ..... 39  
 모바일 문자상담 #1388 ..... 39  
 모자 공동생활가정 ..... 39  
 모자가족 ..... 39  
 모자보건사업 ..... 39  
 모자보호시설 ..... 39  
 모자자립시설 ..... 40

묘지	40
무역기술장벽	40
문제성 음주 자가검진도구 (AUDIT-K)	40
물리치료사	40
미소기준	40
미숙아	40
미혼모공동생활가정	40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41
미혼모자시설	41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41
민간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41
민원인 일련번호	41

## 보

바우처(이용권)	41	보건교육	44
바이오의약품	41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44
반납금	41	보건신기술	44
반환일시금	41	보건의료	44
발열성질환	42	보건의료기관	44
방사선 조사식품	42	보건의료기술	45
방사선사	42	보건의료서비스	45
방임	42	보건의료인	45
배아	42	보건의료인력	45
백내장	43	보건의료인 면허제도	45
벤치마크	43	보건의료정보	45
별정우체국	43	보건진료소 정보시스템	45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44	보건진료원	45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보고통계	46
합산된 재직기간	44	보수월액	46
병용금기	44	보안 USB	46
병원등	44	보안패치	46
		보완대체의약	46
		보육	46
		보육료 수납한도액	46
		보육수당	46
		보육시설	47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4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47
		보육시설운영위원회	47
		보육시설종사자	47
		보육전문요원	48
		보육전자바우처	48
		보육정보센터	48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8
		보장기관	48
		보험급여 및 비급여	48



보험료 .....	49	비관세장벽 .....	53
보험료 경감 .....	49	비정형통계 .....	53
보험료 납부의무 .....	49		
보험료 면제 .....	49	<b>人</b> ———	
보험료 부과점수 .....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53
보험료 부담 .....	49	사망일시금 .....	54
보험료율 .....	50	사실 .....	54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	50	사업수행기관 .....	54
보호기관 .....	50	사업장가입자 .....	54
보호의무자 .....	50	사용량-약가 연동제 .....	5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50	사용자 헬프 데스크 .....	54
복약지도 .....	50	사이버윤리지수 .....	55
복지국가 .....	51	사적연금제도 .....	55
본인부담금 .....	51	사적이전소득 .....	55
본인부담상한제 .....	51	사회공헌정보센터 .....	55
봉안 .....	51	사회보장 .....	55
봉안당 .....	51	사회보장협정 .....	55
봉안시설 .....	51	사회보험 .....	55
부가가치기준 .....	51	사회복무제도 .....	55
부랑인 .....	52	사회복지 .....	56
부랑인 복지시설 .....	52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센터 ..	56
부속서 .....	52	사회복지 전달체계 .....	56
부양가족연금액 .....	5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6
부양의무자 .....	52	사회복지관 .....	56
부자 공동생활가정 .....	52	사회복지사 .....	56
부자가족 .....	52	사회복지사업 .....	57
부자보호시설 .....	52	사회복지서비스 .....	57
부자자립시설 .....	53	사회복지지출 .....	57
부적격혈액 .....	53	사회서비스 .....	57
분권교부세 .....	5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58
분묘 .....	53	사회서비스선도사업 .....	58
분산형 통계제도 .....	53		

사회안전망 .....	58	소득평가액 .....	62
사회서비스 일자리 .....	5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62
산후조리업 .....	58	수련병원 .....	62
살아있는 자 .....	58	수련보조수당 .....	63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	59	수목장림 .....	63
생계급여 .....	59	수정 .....	63
생명과학기술 .....	59	수혈 .....	63
생물의약품 .....	59	수형분석도 .....	63
생물테러전염병 .....	59	슈어스타트 .....	6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59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63
생산가능인구 .....	59	시간가중수익률 및	
생식건강 .....	59	금액가중수익률 .....	63
생약 .....	60	식중독 .....	64
서비스 거부 공격 .....	60	식품영양표시 .....	64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60	식품위생 .....	65
서비스 및 투자분야		식품이력추적관리 .....	65
시장개방 방식 .....	60	식품첨가물 .....	65
선별(등재)목록 .....	60	식품표시 .....	65
선별등재제도 .....	60	신생아 .....	66
선천성 난청 .....	60	신생아집중치료실 .....	66
선천성 대사이상 .....	60	신약 .....	66
선천성이상아 .....	61	신의료기술평가 .....	66
선택병의원 제도 .....	61	신종인플루엔자(PI) .....	66
선택진료제도 .....	61	신체적 학대 .....	66
설립 .....	61	실명인증 .....	67
성매매 대상 청소년 .....	61	실종가족지원 .....	67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61	실종아동전문기관 .....	6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61	심뇌혈관질환 .....	67
성분명처방 .....	61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	67
성적 학대 .....	62		
세번변경기준 .....	62		
소득인정액 .....	62		



##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용어 해설집 (0~ㅎ, 1~4)



### 제2장



아동	69	암호화	71
아동 · 청소년	69	약국	71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9	약물전달시스템	71
아동급식	69	약사	72
아동보호치료시설	69	약제급여조정위원회	72
아동빈곤율	69	양허안	72
아동수당	6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7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69	여성복지관	7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역내부가가치기준	72
신상정보 등록 · 열람제도	70	역외가공	72
아동학대	70	역외부가가치비율	72
아이돌보미서비스	70	역학조사	73
아이사랑카드	70	연결통산방식	73
안락사	70	연계	73
안전용기 · 포장	70	연계급여	73
알코올상담센터	70	연계기간	73
알코올자조모임(A.A)	71	연계노령연금	73
암 사망률	71	연계노령유족연금	74
암 유병률	71	연계퇴직연금	74
(암)상대생존율	71	연계퇴직유족연금	74
(암)연령표준화발생률	71	연금보험료	74
(암)조발생률	71	연금보험료율	74
		연도별 재평가율	74
		연령금기	75



연명치료 중단	75	위생 및 식물검역(SPS) 협정	79
영아사망률	75	위생관리용역업	79
영양개선	75	위해	79
영유아	75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80
예방접종후 이상반응(AEFI)	75	위험관리	80
예탁	76	유기	80
오송생명과학단지	76	유보안	80
완전노령연금	76	유스호스텔	80
완전생산기준	76	유전자	80
완전통산방식	76	유전자검사	80
외국 민간원조단체	76	유전자 재조합 식품	80
요보호아동	76	유전자변형생물체(LMO)	8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76	유전자은행	81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유전자치료	81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76	유전체	81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77	유족연금	81
요양기관	77	은퇴전후 준비교육	8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77	응급의료	81
요양병상	77	응급의료기관	81
요양보호사	77	응급의료기관 등	81
요양비	78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8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78	응급의료종사자	82
우수심사기준	78	응급의료체계(EMSS)	82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응급입원	82
품질관리기준	78	응급처치	82
원료물질	78	응급환자	82
원산지 규정	78	응급환자이송업	83
원산지 인정기준의 유형	79	의료급여	83
웹 기반 공격	79	의료급여 대불금	83
(웹)방화벽	79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83
위기 청소년	79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83
위기청소년교육센터	79	의료급여 상한일수	83



장애아동수당 .....	92	저체중아출산 .....	98
장애연금 .....	92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	98
장애인 보조기구 .....	92	전문요양기관 .....	98
장애인 .....	92	전문의 .....	98
장애인권리협약 .....	93	전문자격상호인정 .....	98
장애인등록제도 .....	93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병원체보유자) .....	98
장애인보장구 .....	93	전염병의사환자 .....	98
장애인보조건 .....	93	전염병환자 .....	98
장애인생활시설 .....	93	전자서명 .....	99
장애인의 날 .....	94	접근제한 .....	99
장애인의료비 .....	94	정보 보안 .....	99
장애인자녀교육비 .....	94	정서적 학대 .....	99
장애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 .....	94	정신과 입원의 종류 .....	9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94	정신보건시설 .....	99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9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99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94	정신보건전문요원 .....	9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94	정신요양시설 .....	1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95	정신의료기관 .....	100
장애인차별금지 .....	95	정신질환자 .....	10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9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100
장제급여 .....	95	정액수가 제도 .....	100
재가노인복지시설 .....	96	정형통계 .....	101
재범방지 교육 .....	96	제1군전염병 .....	101
재산의 소득환산액 .....	96	제2군전염병 .....	101
재외동포 .....	96	제3군전염병 .....	101
재정계산제도 .....	96	제4군전염병 .....	101
재제조품 .....	96	제네릭 .....	101
재직기간 .....	97	조건부과제외자 .....	101
재직기간 소급통산 .....	97	조건부수급자 .....	101
재직기간 합산제도 .....	97	조기노령연금 .....	101
재직자노령연금 .....	97	조류인플루엔자(AI) .....	102
저소득층 .....	9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9
청소년보호	109
청소년복지	109
청소년성문화센터	110
청소년수련거리	110
청소년수련관	110
청소년수련원	110
청소년수련활동	110
청소년쉼터	110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110
청소년시설	111
청소년야영장	111
청소년유해매체물	111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111
청소년유해물건	111
청소년유해약물	111
청소년유해업소	112
청소년유해행위	112
청소년육성	112
청소년지도자	112
청소년참여위원회	112
청소년특별회의	112
청소년특화시설	112
청소년활동	112
청소년활동시설	113
체납처분	113
체외수정	113
초고령사회	113
최소가공기준	113
최신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cGMP)	113
최저생계비	114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114
출산율	114
치과기공사	114
치과위생사	114
치매	114
치매유병률	114
치매조기검진	114

## ㅋ

크로스 라이선싱	115
----------	-----

## ㅌ

통계	115
통계간행물	115
통계작성기관	115
통합관세율표	115
퇴직급여	115
투자자·정부간 제소 ISD	115
특례노령연금	116
특별지원청소년	116
특정수혈부작용	116

## ㅍ

파랑새포럼	116
파랑새플랜 2010	116
편의시설	116
평균보수월액	116
평균소득월액	116
평균수명	117



포괄수가제 ..... 117  
 포자법 ..... 117  
 포털 ..... 117  
 표준인구 ..... 117  
 푸드마켓 ..... 117  
 푸드뱅크 ..... 117  
 필수 의약품 ..... 118

## ㅎ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118  
 한부모 가족 ..... 11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18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11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118  
 한센인 ..... 118  
 한센인입소자 ..... 118  
 한센인피해사건 ..... 118  
 한약 ..... 119  
 한약제제 ..... 119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 119  
 합계출산율 ..... 119  
 해산급여 ..... 119  
 핵산증폭검사(NAT) ..... 119  
 행위별수가제 ..... 120  
 향정신성의약품 ..... 120  
 헌혈 ..... 120  
 헌혈환부예치금 ..... 120

헤드스타트 ..... 120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120  
 현금급여기준 ..... 120  
 혈액 ..... 120  
 혈액검체역추적시스템 ..... 120  
 혈액관리업무 ..... 121  
 혈액원 ..... 121  
 혈액제제 ..... 121  
 화장품 ..... 121  
 화장품전성분 표시제도 ..... 121  
 화학적 합성품 ..... 121  
 확인조사 ..... 121  
 환자만족도조사 ..... 121  
 활동인력 수 ..... 121  
 효능군 ..... 122  
 효문화 ..... 122  
 희귀의약품 ..... 122

## 1~4

1차통계 ..... 12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122



A~I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124	DWDM .....	126
ATM .....	124	ECMS .....	127
Bandwidth.....	124	EDI 청구 .....	127
BCG .....	124	EDW .....	127
Bio cluster.....	124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127
Bio Marker .....	124	e-Health.....	127
CDSS .....	124	EHR .....	127
CEPA(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124	e-Learning .....	127
CRM .....	125	EMR .....	127
CRO .....	125	EMS .....	128
Data Mart .....	125	ESM .....	128
Data Mining .....	125	ETL .....	128
DB .....	125	FMTF .....	128
DBA .....	125	FOB .....	128
DBMS .....	125	Frame Relay .....	128
DDA(도하개발어젠다) .....	125	FTA(자유무역협정) .....	128
DDoS .....	125	GCC(걸프협력이사회) .....	128
DICOM.....	126	GPKI.....	128
DNS Server .....	126	Health-Care.....	129
DQM3 .....	126	HIV 감염인/AIDS 환자 .....	129
DRM .....	126	HTLV .....	129
DRS .....	126	HTTP .....	129
DSS .....	126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	129
DW .....	126	IDS .....	129
		IP .....	129
		IPS.....	129
		IPv6 .....	130



I~W

ISP	130	PHCDSS	133
KBR	130	PHR	133
KMS	130	POCS	133
KPI	130	PR(이행의무)부과 금지	133
LDAP	130	R/O(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133
LP(현지 주재 요건) 부과 금지	130	ROUTER	133
MA(시장 접근) 보장 의무	131	SAM	134
MERCOSUR(남미공동시장)	131	SPS/TBT 통보절차	133
MFN(최혜국 대우) 보장 의무	131	SQL	134
Modalities(세부원칙)	131	SSL	134
Mode 1(국경 간 공급)	131	SSO	134
Mode 2(해외소비)	131	Standstill(현상동결)	134
Mode 3(상업적 주재)	131	Traffic	134
Mode 4(자연인 이동)	131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132	협정	134
NAT	132	u-Health Care	135
NPKI	132	UN CPC	134
NT 보장 의무	132	UN아동권리협약	135
OCS	132	UPS	135
ODS	132	Validation	13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2	VPN	135
OLAP	132	WAS	135
Oracle	133	WSDL	135
OTP	132	WTO(세계무역기구)	135
PACS	133	WTO 기술장벽(TBT) 위원회	136
		WTO 위생검역(SPS)위원회	135
		WTO 통일원산지 협상	136



# 제 1 장



7 ~ 8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 가구원

(家口員, Household member)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가구 구성원 중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도 있고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가공통계

(加工統計)

1차 통계를 가지고, 이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통계로 대표적인 가공통계로는 생명표가 있다.

## ● 가산금

(加算金, Additional dues)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금전 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상 제재와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씩 추가 가산하되 최대 9%까지 부과하고 있다.

- 현재, 가산금은 연체금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시행일인 시행일인 2011. 1. 1 부터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 가임기여성

(加妊期女性)

언제든지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생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를 가임기(加妊期, menacme)라고 하며, 15세에서 49세까지 월경(月經)과 배란(排卵)의 생리적인 과정이 있어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말한다.

## ● 가정

(家庭, A family)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 가정위탁

(家庭委託, Foster care)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 ● 가정의례

(家庭儀禮, A family Rite)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가족생활만족도

(家族生活滿足度, Family Living Satisfaction Index)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 수준, 가족갈등 해결방식,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원 건강, 삶의 성취도, 전반적 가족생활 등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 5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말한다.

## ● 가족친화 사회환경

(家族親和 社會環境,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가족친화 인증제

(家族親和 認證制,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가족친화 직장환경

(家族親和 職場環境, Family Friendly Work Environment)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가족친화 마을환경

(家族親和 마을環境)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가족친화제도

(家族親和制度, Family Friendly System)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및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등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가족친화지수

(家族親和指數, Family Friendliness Index)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 간호사

(看護士, Registered Nurses)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解産婦)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간호사의 보건활동

-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②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③ 「결핵예방법」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④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의료법」 제2조〉

## ● 간호조무사

(看護助務士, Assistant Nurses)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감액노령연금

(減額老齡年金, Reduced Old-age Pension)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개시연령인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며 지급

되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입기간	지급되는 급여액	가입기간	지급되는 급여액
10년	기본연금액×50%	15년	기본연금액×75%
11년	기본연금액×55%	16년	기본연금액×80%
12년	기본연금액×60%	17년	기본연금액×85%
13년	기본연금액×65%	18년	기본연금액×90%
14년	기본연금액×70%	19년	기본연금액×95%

● 개량신약

(改良新藥, IMD : Incrementally Modified Drug)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약품을 개발목표제품으로 하여 연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되었거나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으로 허가받은 약제 및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
- ② 일반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의 염이나 구조 등을 변경하여 특허를 회피(=도전)한 의약품”을 말한다. 신기술과 특허, 약가 및 임상 시험 자료 등 경쟁력을 갖추고 오리지널에 준하는 장점을 가진 의약품으로 특허·신기술·고부가가치 실용화, 낮은 투자대비 높은 성공확률, 빠른 상품화가 특징이다.
- ③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나 제형 등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

● 개별가구

(個別家具, eligible household)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個別家口 所得評價額, Assessed income of household)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개안수술

(開眼手術, An eyesight recovery operation)

안검진 결과 백내장, 망막질환, 굴절이상, 결막·공막질환 등의 안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한다.

● 개인식별정보

(個人識別情報,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 개인헌혈 및 단체헌혈

(個人獻血 및 團體獻血, Individual blood donation, group blood donation)

개인헌혈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이며, 단체헌혈은 학교, 군대, 기업체 등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개장

(改葬, Re-interment / Re-burial)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건강가정

(健康家庭, healthy family)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 건강가정사업

(健康家庭事業, Healthy Family Project)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 건강가정지원센터

(健康家庭支援센터,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시·군·구에 설치한 기관(민간 위탁 가능)을 말한다.

## ● 건강검진

(健康檢診, physical examination)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 건강검진기관

(健康檢診機關, health examination agency)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 건강검진자료

(健康檢診資料, health examination documents)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 ● 건강기능식품

(健康機能食品, functional food)

인체에서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일상적인 식사나 단순히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일반 식품과는 차이가 있어 섭취목적, 섭취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健康機能食品履歷追跡管理, Traceability of Health Functional Foods)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 ● 건강보험 가입자

(健康保險 加入者, the insure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며, 이 중 가입자는

자격·보험료 산정·징수 등의 관리단위가 되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 된다.

-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건강보험 적용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건강보험 부담액 및 건강보험 급여액**  
 (健康保險 負擔額 및 健康保險 給與額,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and benefit per covered person)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능력이 있는 자의 질병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상호부조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 건강보험부담액 :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한해동안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1인당 건강보험부담액 = 
$$\frac{\text{건강보험 총부담액}}{\text{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급여액 :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평균적으로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액수

○ 1인당 건강보험부담액 = 
$$\frac{\text{총 급여비}}{\text{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 사업장**

(健康保險 事業場, Health Insurance applied working places)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실체상 '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영리, 과세, 개인·법인여부 불문)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健康保險 地域加入者, Self-employed Insured)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자)도 입국 후 3개월 경과시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健康保險 職場加入者, Employee Insured)

건강보험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다.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건강보험 피부양자**

(健康保險 被扶養者, dependents of the insured)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健康保險公表審議委員會, Deliberation Committee on Insurance Fraud Cases Publication)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회의기구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 Health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회의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Health Insurance for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총 25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 건강보험증

(健康保險證, health insurance card)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도 대체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 건강생활유지비

(健康生活維持費)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면서 1종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연 7만 2천원)을 사이버머니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 검역

(檢疫, Quarantine)

국외발생 전염병이 국내 유입·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 검역전염병

(檢疫傳染病, Quarantinable disease)

콜레라·페스트·황열과「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검역법」 제2조〉

### ● 게놈프로젝트

(Genome Project)

인체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지도로 만드는

일. 미국·일본 등 6개국 컨소시엄팀(HGP)과 미국 벤처기업인 셀레라 지노믹스가 각기 수행하여, 2001년 2월 전체 인간 게놈 지도 완성 공식 발표했다.

### ● 결막·공막질환

(結膜·鞏膜疾患, conjunctival and scleral disorders)

얇고 투명한 막으로 눈의 흰자위 부분과 눈꺼풀의 안쪽 표면을 덮고 있는 결막과 안구의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질긴 막으로 눈의 흰자위 부분인 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결막염, 공막염, 결막하 출혈 등이 있음

### ● 결손처분

(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 ● 결측치

(缺測值, Missing Value)

실험이나 조사에서 얻을 관측값 중 관측되지 못한 값(동의어: 결측값)

### ● 결핵

(結核, Tuberculosis)

결핵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이 폐결핵이나, 그 밖에 전신의 모

든 장기(臟器)에도 침범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2조〉

### ● 결핵관리업무

(結核管理業務, Tuberculosis control management)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결핵예방법」 제2조〉

### ● 결핵유병률

(結核有病率, Tuberculosis prevalence rate)

일정 시점에 일정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결핵환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표기를 한다.

### ● 결혼이민자

(結婚移民者, Marriage immigrant)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귀화허가자(국적법 제4조)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 ● 경제적 학대

(經濟的虐待, Exploitation)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 고령사회

(高齡社會, 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0% 미만인 사회를 말한다.



## ● 고령친화사업자

(高齡親和事業者)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

## ● 고령친화산업

(高齡親和产业)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

## ● 고령친화제품등

(高齡親和製品等)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

## ● 고령화사회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말한다.

## ● 고열량·저영양 식품

(高熱量·低營養食品, High-calorie and Nutrient-poor Children's Favourite Food)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

호식품을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 ● 고위험병원체

(高危險病原體, Highly dangerous pathogen)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공공보건의료

(公共保健醫療, Public Healthcare)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공공보건의료기관

(公共保健醫療機關,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공공보건포털

(Public Health Portal - Web)

대국민 대상으로 건강정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진료예약, 진료조회, 검사결과조회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고 보건소의 관련 서비스들을 온라인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웹 사이트

## ● 공공부조

(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래

에는 '공적 부조' 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 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公共分野 老人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받는 일자리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을 포함한 '사회공헌형' 으로 통칭한다.

### ● 공공아이핀

(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G-PIN)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 상의 개인 고유 식별 번호로써 개인정보 강화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이버 상에서 사용. 공공아이핀 공식 사이트에 회원가입 또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 후 사용 할 수 있다.

### ● 공공차관

(公共借款, public loan)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및 의료취약지구 병원 건립, 의료장비 보강, 국공립병원 장비 보강 등의 목적으로 OECF(일본해외협력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KFW(독일재건은행 기금)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을 말한다.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共同生活家庭, Group home)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대리보호자 (2인시설장, 보육사)가 5명~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리보호자 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보호아동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의뢰 또는 보호필요아동 발견시 보호자 및 아동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공무원연금

(公務員年金,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지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0년에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이다.

### ● 공인인증서

(公認證書, Certificate)

본인 인증을 위해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 인증서로 사용자 컴퓨터에 보관되며,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 ● 공적연금 연계제도

(公的年金 連繫制度, Linkage of insured periods of public pension schemes)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 공적연금제도

(公的年金制度, Public Pension Scheme)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고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공적이전소득

(公的移轉所得, Public Transfer Income)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공제법

(控除法, build-down method)

어떤 상품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총 상품가치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만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

$$\text{○ 역내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물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물품가격}} \times 100\%$$

### ● 공중보건업무

(公衆保健業務, Public health service)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공중보건의사

(公衆保健醫師, Public health doctor)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공중위생영업

(公衆衛生營業, Public sanitary business)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 관세감축 방식

(關稅減縮方式)

관세감축방식에는 선형방식과 비선형방식이 있다.

○ 선형방식(Linear Formular) 관세감축

- 대상품목의 관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한·미, 한·EU FTA 시 타결한 철폐방식으로 FTA 발효시 관세 감축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음(매년 1/N씩 감축)

○ 비선형방식(Non-linear Formular) 관세감축

- 일정시점에 관세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방식(sudden death)

### ● 관세환급

(關稅還給, Duty Drawback)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 ● 관심보건소

(關心保健所, Interested Public Health Center)

공공보건포털 사용 시 자주 가는 보건소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정 보건소에 대한 진료 조회, 예약 등을 할 수 있음. 관심보건소 변경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개인정보 수정에서 변경 가능

## ● 광파일시스템

(Optical Disk Filing)

종이로 작성된 문서를 CD, HDD를 이용하여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공간, 비용, 검색 용이하고, 파일공유,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등

## ● 교육급여

(教育給與, Education Benefits)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 교육적 선도(예방적, 회복적) 지원

(教育的 先導(豫防的, 回復的) 支援,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service)

비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비행·범죄를 행한 청소년들의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가해·피해청소년 및 그 가족의 치유를 도움으로써 해당 청소년이 사회(가정 및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내지 제17조〉

## ● 구강보건산업

(口腔保健產業, Oral health industry)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구강보건법」 제2조〉

## ● 구강보건용품

(口腔保健用品, Oral health products)

구강질환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강보건법」 제2조〉

## ● 구급차등

(救急車等, ambulances, etc.)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National subsidy)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함께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이전재원 중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s)이기 때문에 매년 중앙정부의 사업 심사에 의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비중을 국고보조율 또는 기준보조율이라 하는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배정함에 있어서 기준보조율에 덧붙여 차등보조율의 적용가능

##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장기이식관리의 총괄기구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자료 종합관리,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 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 이식 의료기관 지도감독, 장기이식에 관한 홍보·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를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립의료원 안에 설치되어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

### ● 국민건강보험

(國民健康保險, National Health Insurance)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운영하는 공 보험제도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국민 의무 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핵심요소로 함)

- 따라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또는 민간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분	사 보 험	사 회 보 험
가입 방법	임의 가입	강제 가입
보험료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른 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보험 급여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보험료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 징수

### ● 국민건강증진사업

(國民健康增進事業,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 국민보건계정

(國民保健計定, National Health Accounts)

국민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종합표이다.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國民年金 出產크레딧, additional coverage granted for childbirth)

출산 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3인 이상인 경우 30개월, 4인인 경우 48개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을 가산하며, 자녀에는 친자와 양자를 포함한다.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國民年金과 職域年金の 最小 加入其間, Minimum Insured Period for Pension Benefit)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직역연금의 경우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한다.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20년

- '07년 현재 공무원연금 퇴직자(30,909명)의 33%, 사학연금 퇴직자(24,601명)의 85%, 군인연금 퇴직자('06년, 15,998명)의 88%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

- 만약 공무원 19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8년에 달하더라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일시금 및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됨

## ● 국민의료비

(國民醫療費, Total health expenditure)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의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으로,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가구 포함) 지출을 포함하고, 교육훈련, 연구 및 환경보건과 같은 '보건관련' 지출은 제외된다. 전체 경상의료비의 두 주요 요소는 개인의료비와 집단의료비이다.

○ 국민의료비 = 개인의료비+집단의료비+

고정자본형성

-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흔히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로, 보통의 의료비는 이러한 개인의료비를 지칭함
- 집단의료비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산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됨.
- 고정자본형성이란 시설 및 자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칭함. 1년간의 보건의료관련 신규건물(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됨

## ● 군인연금

(軍人年金, Military pension)

군인의 퇴직·사망·요양 시, 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제도이다.

군인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되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 ● 굴절이상

(屈折異常, Ametropia)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동안 언젠가는 시각이상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굴절 이상의 형태로 근시, 원시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굴절이상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와 같은 도구로 교정할 수 있고 수술로 완치가 가능함

## ● 근로빈곤층

(勤勞貧困層, Working Poor)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미만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근로활동중인 자를 말한다. (2008년 근로빈곤층은 총 190,856명)

○ 상시 : 24,712명, 일용임시 : 97,969명, 자영업 : 13,795명, 자활대상자 : 54,380명

## ●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勤勞所得控除, Earned Income Deduction)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말한다. 현재는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해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 ● 근로장려세제(EITC)

(勤勞·勸說制,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를 통해 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급성기 병상

(急性期 病床, Acute Beds)

30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의 병상을 포함한다.

### ● 급성전염병

(急性傳染病, Acute infectious disease)

바이러스·세균 등을 병원체로 하여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직접 감염되거나, 간접적인 경로로 음식물·오물·모기·벼룩 등을 통해 감염·유행되는 급성질환이다.

### ● 급여정지

(給與停止, Suspension of benefits)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일 때 등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 ● 급여제외목록

(給與制外目錄, negative list)

보험급여 제외대상 의약품 목록을 말한다.

### ● 급여제한

(給與制限, Restriction of benefits)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 보험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機關生命倫理審議委員會,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각 기관(배아

생성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 유전자연구기관 등 7개 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위원회다.

### ● 기능성

(機能性, Functionality)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

### ● 기능성화장품

(機能性化粧品, Functional Cosmetics)

화장품 중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 「화장품법」 제2조 >

### ● 기대여명

(期待餘命, life expectancy)

특정년도의 특정연령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서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인구집단이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척도 중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기대여명의 변화는 생활수준, 생활습관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일군의 상호의존적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 ● 기등재의약품

(既登載醫藥品, already listed drugs)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으로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말한다.

## ● 기본연금액

(基本年金額, Basic Pension Amount)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기본연금액(年) ]	
$= \{ [(2.4(A+0.75B) \times P1/P) + \{1.8(A+B) \times P2/P\} + 1988-1998년 \quad 1999-2007년$	
$\{1.5(A+B) \times P3/P\} + \{1.485(A+B) \times P4/P\} + \dots$	
$2008년 \quad 2009년$	
$+ \{1.2(A+B) \times P23/P\} + \{X(A+A) \times C/P\} +$	
$\{X(A+1/2A) \times 6/P\} \}$	2028년 이후 출산크레딧
$\text{균복무크레딧} \times (1+0.05n/12)$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균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n : 20년 초과 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균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07. 3. 1 이후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 1,618,914원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 C : 출산에 대한 추가가입기간 (자녀수에 따라 12, 30, 48, 50개월)	

## ● 기부식품제공사업

(寄附食品提供事業, Donated Food Distribution Program)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기부식품이라고 하며,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①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②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③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을 말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제3조〉

## ● 기생충질환

(寄生蟲疾患, Parasitic disease)

회충·편충·요충·간흡충·폐흡충·장흡충류·조충류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기생충질환예방법」 제2조〉

## ● 기준소득월액

(基準所得月額, Standard Monthly Income)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소득을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한 뒤 그 소득구간별(등급별) 대표값을 소득월액으로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하였으나, 2008.1.1부터는 실제 소득액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되는데, 신고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기초노령연금

(基礎老齡年金, Basic Old-age Pension)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노령연금<sup>①</sup> 또는 기초연금<sup>②</sup>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초 연금과 구별되고, 본인에게 보험료 부담이 없다(비기여)는 점에서는 노령연금과 차이가 있다.

-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권 발생
- ② 기초연금 :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비기여형(본인 부담이 없음) 급여로서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90% 이상)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보조

(基礎老齡年金 國庫差等補助, graded state-aid of the Basic Old-age Pension)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구성된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0%~90% 범위 내에서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231개)로 다르게 결정·지급된다.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서울 50%, 지방 80%를 기준 보조율로 하되,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복지비지수를 감안하여 10%p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서, 기초노령연금처럼 보조율 자체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 기초노령연금 사전DB

(基礎老齡年金 事前 DB, pre-collected database for the paymen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연금신청자 또는 기준수급자의 소득·재산내역 및 인적사항 등을 업무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서 미리 입수해 놓은 신청 예정자(65세 이상) 및 수급자의 각종 공적자료를 말한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지원 대상이 대규모('09년 약 360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입수·구축된 행정자료(사전DB)를 중심으로 소득·재산 및 인적자료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조사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변동자, 부정수급자, 사망·전출입자 등 필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량을 최소화

### ● 긴급복지지원제도

(緊急福祉支援制度,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말한다.

### ● 납부예외제도

(納付例外制度, Exception of Contributions Paym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동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자격상실과 비교하여 납부예외는 예외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격이 인정되므로 이 기간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내부업무포털

(Public Health Portal - IntraNet)

보건소 종사자들이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는 통로이며 KM, 이리닝 등 업무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 ● 넷북

(Netbook)

휴대형 미니 노트북. 인터넷, 문서 작업, 이메일 등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동성을 갖도록 제작된 것. 9~10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사용, CPU도 저전력 제품 사용, 1~1.5Kg 내외 무게임

### ● 노년부양비

(老年扶養費, Old dependency ratio)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를 말한다.

$$\text{노년부양비} = \left(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15~64세 인구}} \right) \times 100\%$$

### ● 노령연금

(老齡年金, Old Age Pension)

가입자가 은퇴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09년 현재 60세, '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조정되어 '13~'17년까지 61세, '18~'22년까지 62세, '23~'27년까지 63세, '28~'32년까지 64세, '33년부터는 65세)에 도달한 경우 지급된다. 노령 연금은 가입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청구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 ● 노숙인

(露宿人)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 노인돌봄서비스

(老人돌봄서비스, Care service of the elderly)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노인복지시설

(老人福祉施設,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aged)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

### ● 노인여가복지시설

(老人餘暇福祉施設,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한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

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 ● 노인의료복지시설

(老人醫療福祉施設,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을 말한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老人일자리 專擔機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

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 노인장기요양

(老人長期療養, Long-Term Care for elderly)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장기요양 1~3등급)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1급·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 노인주거복지시설

(老人住居福祉施設,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 노인학대

(老人虐待, Elder abuse)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 ● 노후상담설계(CSA)

(老後相談設計,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국민연금 상담원이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뇌사자

(腦死者, Brain dead peopl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腦死判定對象者管理專門機關, Hospital-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뇌사자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 뇌사판정의료기관

(腦死判定醫療機關, Brain Death Judgement Hospital)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전문의사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공무원, 교원, 종교인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누적기준

(累積基準, 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域內)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다문화가족

(多文化家族, Multicultural family)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4조)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文化家族持援센터,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 다층노후소득보장

(多層老後所得保障,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개인저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 ● 당연적용사업장

(當然適用事業場, mandatorily applicable workplace)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 대마

(大麻)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제외한다.

- 대마초의 종자는 한약재로서 '마자인'으로 사용되며, 대마초로부터 제조된 '삼베'는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분 류	정 의
대마초 (Marihuana, Cannabis, happy Smoke)	대마초의 잎과 꽃대·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통상 마리화나로 지칭(대마엽에 2~3% THC 함유)
해쉬쉬 (Hashish, Hash)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압착시켜 여러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 (2~10% THC 함유)
해쉬쉬 오일 (Hashish Oil, Cannabis Oil)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농도로 농축시켜 추출(20% THC 함유)
THC (Tetrahydrocannabinol)	대마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 중추 신경흥분약에 속하며 그 작용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 대체조제

(代替調劑, Generic substitution)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이 약사가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보하여야 하며,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사법」 제27조〉

## ● 대한민국 아동총회

(兒童總會, Children's General Assembly of Korea)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말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만든 회의체(지역대회, 본대회로 구분)

## ● 델타확인 및 이중확인

(delta check and double check)

- 델타확인 : 혈액검사에서 과거 검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원인규명이 되기 전 검사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점검체계를 말한다.
- 이중확인 : 혈액검사 결과를 검사자간(수평점검) 상위자(수직점검)에게 확인 후 확정하는 점검체계

## ● 독거노인

(獨居老人, Elderly living alone)

사회적관계 단절,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 제한,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욕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65세이상 1인가구 노인

## ● 동물실험

(動物實驗, Animal experiment)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실험동물 :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 ● 동물실험 규범, 비임상시험 기준

(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의약품의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여 약리 작용을 연구하는 단계에서의 실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 ● 동물실험시설

(動物實驗施設, Laboratory animal facility)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 ● 두드림존

(Do Dream Zone)

시설되소, 쉽터입소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진로지도, 자립동기화, 경제교육,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영문으로 두(Do) 드림(Dream) 존(Zone)으로 “꿈을 가져라!”, “꿈을 꾸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어로는 ‘미래의 문을 두드리자’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 ● 드림스타트

(Dream start)

빈곤아동(0~12세)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아동복지 공공 전달체계, 시군구 공무원 중심의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복지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 ● 등급외 A·B·C형

■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인 1~3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다.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55점 이상 75점 미만

■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미만인 자는 “등급외자”로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 민간단체, 건보공단 등이 운영하는 각종 지역보건복지 예방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해 주고 있음

○ 등급외A : 45점 이상 55점 미만

○ 등급외B : 40점 이상 45점 미만

○ 등급외C : 40점 미만

## ● 등록헌혈제

(錄獻血制, blood donor registration)

건강한 개인헌혈자 중 희망자를 등록하여 고정적이고 주기적으로 헌혈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 디딤씨앗통장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18세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의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아동의 저축액과 이에 매칭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롤업기준

(Roll Up)

역내부가가치 계산 시,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중간부품들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域內)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치가 역내(域內)산으로 판정받는 것

## ● 리펀드제도

(Refund system)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수익액의 일부를 공단에 환원시켜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 마약

(麻藥, Narcotic drugs)

양귀비·아편 및 코카엣, 이들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혼합물질, 혼합제제 포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마약류

(麻藥類)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만성질환

(慢性疾患, Chronic diseases)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 부담이 크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등이 있다.

## ● 망막질환

(網膜疾患, retinal disease)

안구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신경 섬유와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안질환을 통틀어 망막질환이라 함(망막정맥 폐쇄, 망막박리, 망막병증, 당뇨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등)

## ● 모바일 문자상담 #1388

(Youth mobile consultation #1388)

전문상담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대인관계, 진로상담, 정보제공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하는 모바일 문자상담 번호이며, 필요시 경찰, 학교, 병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학업, 취업,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모자 공동생활가정

(母子共同生活家庭, Group home for single-mother families)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모자가족

(母子家族, single-mother families)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 모자보건사업

(母子保健事業, Mother and child health services)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 ● 모자보호시설

(母子保護施設, care facility for single-mother families)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모자자립시설

(母子自立施設, self-support facility for single-mother families)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묘지

(墓地, Grave yard)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무역기술장벽

(貿易技術障壁,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 및 인증절차 등을 자국의 실정에 따라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

- 1995년에 발효된 WTO협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협정)은 이러한 무역장벽에 대한 협정임

### ● 문제성 음주 자가검진도구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K)

문제성 음주 자가검진도구(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는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진도구를 말하며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AUDIT-K라고 한다.

### ● 물리치료사

(物理治療士, Physical Therapist)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미소기준

(微小基準, De Minimis)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역외(域外)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

### ● 미숙아

(未熟兒, Premature infant)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미숙아 발생률(%) =

$$\frac{\text{당해 연도의 미숙아 발생 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간 총 출생아수}} \times 100\%$$

〈「모자보건법」 제2조〉

### ● 미혼모공동생활가정

(未婚母共同生活家庭, group home for unwed mothers)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



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未婚母子共同生活家庭, group home for unwed mothers and children)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미혼모자시설

(未婚母子施設,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and children)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民間分野 老人일자리)

주유소나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부예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 ● 민간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民間醫療機關 機能補強事業, Hospitals Development Loan)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병상 신·증축, 시설개보수, 의료장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자율 및 상환조건 : 4% / 5년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액 : 신증축 20억원, 개보수 10억원, 의료장비 구매 5억원

### ● 민원인 일련번호

(民願人 一連番號, patient serial number)

보건소 이용 시 자동 부여되는 개인고유번호로 공공보건포털, 업무포털 내 업무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고유번호임

### ● 바우처(이용권)

(Voucher)

서비스 이용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醫藥品, biopharmaceutical)

기존 화학합성 방식이 아닌 생명체를 이용해 약을 만드는 것으로 난치병 정복에 필수적인 분야이다.

### ● 반납금

(返納金, Repayment of the Lump-sum Refund)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으로, 이는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소멸된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나중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 반환일시금

(返還一時金, Lump-sum Refund)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제도에서 이탈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

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및 국외이주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 발열성질환

(發熱性疾患, Febrile disease)

발열성질환에는 감기를 비롯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증, 암 등 악성종양 · 내분비질환 · 교원병 등이 있다. 특히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은 늦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행한다.

### ● 방사선 조사식품

(放射線 照射食品, Irradiated foods)

식품을 일정기간동안 방사선에너지(이온화에너지)에 노출시켜 필요한 효과(발아억제, 속도 지연, 살균, 살충 등)를 가져오는 처리방법을 식품조사(food irradiation)라 하고 이렇게 조사된 식품을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한다.

○ 방사능 오염식품 : 방사능 오염식품이란 핵 반응기 누출사고 또는 핵실험에서 발생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우발적으로 오염된 식품입니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식품이 보존이나 위생적인 품질을 향상시킨 조사식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식품 조사는 식품 밖에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식품에 쪼인 감마선은 열로 변하거나, 식품을 통과하여 빠져나가 버리므로 식품 속에 잔류되어 방사선을 내보내거나 식품내 물질이 방사능을 띠게 하지는 않는다.

### ● 방사선사

(放射線士, Radiographer)

진리 및 비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방임

(放任, Neglect)

- ①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②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③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 ● 배아

(胚芽, Embryo)

수정란이 첫 번째 세포분열을 시작하여 '태아'가 되기 전(사람의 경우 임신 8주 이전)까지를 말하며,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다.

- 잔여배아 :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백내장

(白內障, Cataract)

눈으로 들어온 빛은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의 투명한 안구조직인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 벤치마크

(Benchmark)

펀드를 운용할 때 그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을 말한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 지수를, 채권형 펀드는 채권평가사에서 발표하는 채권지수나 국고채 3년 등을 사용한다.

[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

자산군	현재 벤치마크 지수
국내주식	KOSPI
국내채권	국민연금종합지수(NPS Customized Index)
해외주식	MSCI All Countries World Index (ex-Korea, Hedged to KRW)
해외채권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Korea, Hedged to KRW)
대체주식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가중평균

-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코스피지수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장가격을 토대로 작성된 지표로 전반적인 주식의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KOSPI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 현재의 주가지수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즉, 지난 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현재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 Customized Index :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특성에 맞게 각 섹터별(자산군) 지수를 조합하여 만든 벤치마크 지수

-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MSCI지수는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수다.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 발표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개나 제시하고 있다. MSCI지수의 산출기준은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유동주식 방식 (Free floating)'으로 정부 보유 및 계열사 보유 지분 등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동주식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한다.
- Barclays Capital Aggregate Bond Index : Barclays Capital Government/Corporate Bond Index, Mortgage-Backed Securities Index, Asset-Backed Securities Index로 구성된 벤치마크 인덱스로 투자등급 이상으로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소 1억불 이상의 발행액면가를 가진 유가증권들을 포함한다.
-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는 지수가 아니므로 장기수익률 목표로 사용하고 대체투자 자산군 전체의 벤치마크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세부자산군의 실제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함

● 별정우체국

(別定郵便局, Special Post Office)

별정우체국이란, 1961년부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한다.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은 비용의 조성,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국가의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다른 직역연금과 유사하며 국가가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다.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別定郵便局 職員年金, Special Post Office Employees Pension)

별정우체국 직원을 위하여 1982년 시행된 공적 연금제도로서,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입은 경우 직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합산된 재직기간

(別定郵便局法에 의해 合算된 在職其間, Linkage of service periods under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이 별정우체국 임직원으로 입사하여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종전에 가입하였던 연금제도의 재직 또는 복무기간에 대해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단, 반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 ● 병용금지

(並用禁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 ● 병원등

(病院等, hospitals, etc.)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

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3조의 2〉

### ● 보건교육

(保健教育, Health Education)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保健所統合情報시스템, Public Health Center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 보건신기술

(保健新技術, new health technology)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 ● 보건의료

(保健醫療, Healthcare)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 보건의료기관

(保健醫療機關, healthcare institution)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 보건의료기술

(保健醫療技術, Health Care Technology)

의과학 · 치의학 · 한의학 · 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 · 의료기기 · 식품 · 화장품 · 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 · 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 · 의료 관련 기술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 ● 보건의료서비스

(保健醫療提供, Healthcare service)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 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 ● 보건의료인

(保健醫療人, healthcare professional)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 보건의료인력

(保健醫療人力, healthcare professional)

「의료법」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 병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 안경사, 「약사법」의 약사 · 한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 ● 보건의료인 면허제도

(保健醫療人 免許制度, licens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시험을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 ● 보건의료정보

(保健醫療情報, Healthcare information)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수자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 보건진료소

(保健診療所, Primary health care post)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보건진료소 정보시스템

(保健診療所 情報體系, primary health care post information system)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전체 보건진료소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 중인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 ● 보건진료원

(保健診療員,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히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 보고통계

(報告統計)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통계를 작성한 것을 말하며, 행정통계라고도 한다.

### ● 보수월액

(報酬月額, Salary amount per month)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로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월평균 보수를 말한다.

○ 하한 보수월액 28만원, 상한 보수월액 6,579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 ● 보안 USB

(保安 USB, Security Universal Serial Bus)

정보유출방지 등의 보안 기능을 갖춘 USB 메모리. 모든 보안 USB는 필수적으로 사용자 식별·인증, 지정데이터 암호·복호화, 저장된 자료의 임의복제 방지, 분실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삭제 등의 4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함. 일반적으로 보안 USB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USB메모리를 제어하여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에 대한 암호·복호화 등 기능 수행.

### ● 보안패치

(保安 패치, Security Patch)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보안패치를 할 경우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각종 PC 오류 원인 제거

### ● 보완대체의약

(補完代替醫藥,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다양한 범위의 치료에 대한 철학·접근방법·치료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도권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료보험을 통해 그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등 정통의학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양한 의료와 건강관리체계, 치료법 그리고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 ● 보육

(保育, Childcare)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 보육료 수납한도액

(保育料 收納限度額, childcare fee ceiling)

보육시설에서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액으로써 매년 시도지사는 시설 유형별, 아동의 연령별 수납액을 결정 고시한다.

### ● 보육수당

(保育手當, childcare benefit)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일종



으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맺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 보육시설

(保育施設, Childcare center)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 보육시설의 종류 ]

- ①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⑥ 민간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

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을 말한다. 상시적으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保育施設 未利用兒童 養育手當, child care allowance for childcare center non-users)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말한다. 연령·지원금액·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保育施設 評價認證制, child care center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3년 유효기간의 인증시설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保育施設運營委員會, steering committee of childcare center)

보육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보육시설 운영 관련 심의 기구로서,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한다. 특히, 정원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 ● 보육시설종사자

(保育施設従事者, employees in childcare centers)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

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보육전문요원

(保育専門委員, child care specialized staff)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 자격요건 ;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보육전자바우처

(保育電子바우처, Childcare Electronic Voucher)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 지원 자격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보육료를 전자카드에 담아 지급한다.

### ● 보육정보센터

(保育情報센터,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설치

- 중앙보육정보센터(보건복지부장관 설치), 지방보육정보센터(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설치)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保育統合情報系統, Childcar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지원보육료의 효율적 관리, 부모의 정보접근성 제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구축한 통합시스템으로, 부모, 어린이집, 행정, 바우처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 ● 보장기관

(保藏機關, assistance agency)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보험급여 및 비급여

(保險給與 및 非給與)

-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급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

- 현물급여 :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요양급여, 건강검진 등)

- 비급여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



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말한다.

### ● 보험료

(保險料, Contribution)

보험자인 공단이 행하는 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부담금이며, 보험급여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비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입자 개인과 사용자에게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각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 보험료 경감

(保險料 輕減, Reduction of contribution)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세대중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 보험료 부담완화가 필요한 세대들에 대하여 부과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 보험료 경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의해 적용되며 이때 경감되는 보험료는 월 산정보험료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 ● 보험료 납부의무

(保險料 納付義務, Duty to pay contribution)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근로자는 부담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없음)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 ● 보험료 면제

(保險料 免除, Exemption from Insurance Premium)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거나 군복무 중 또는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사실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급여정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 ● 보험료부과점수

(保險料賦課點數, Points representing ability to pay contribution)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점수를 말한다.

- 하한 점수 20점, 상한 점수 11,000점  
- '08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48,9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 ● 보험료 부담

(保險料 負擔, Burden of contribution)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재원이 필요한 바,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2분의 1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 보험료율

(保險料率, Contribution Rate)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보수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의 주된 재원이 되므로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규모와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률, 의기술의 수준 및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료 크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보험료율은 근로자·사용자, 시민, 소비자, 의·약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급여의 수준, 경제상황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 '08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5.08%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實去來價 償還制度, Actual Transaction Pricing (ATP) System)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상한금액 이내의 실제 구입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 ● 보호기관

(保護技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 ● 보호의무자

(保護義務者,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과 후견인으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보건법」 제21조〉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保護義務者에 의한 入院, Hospitalization by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는 절차로, 입원기한은 6개월이며,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 ● 복약지도

(服藥指導, Instruction for administration of medicine)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②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약사법」 제2조〉

● 복지국가

(福祉國家, Welfare state)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 본인부담금

(本人負擔金, co-payment)

의료급여 소요되는 비용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본인부담금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근로능력 없음)과 2종(근로능력 있음)을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한다.

구 분	1 종	2 종
1차기관(의원급)	1,000원	1,000원
2차기관 (병원·종합병원)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기관 (25개 기관)	2,000원	
CT, MRI, PET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0%
입원	없음	
약국	500원	500원

● 본인부담상한제

(本人負擔上限制, co-payment ceiling)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1년)이 40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로 지나치게 의료비지출이 많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음)이다.

- 전년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 하위 50% 계층 : 200만원
  - 중위 50~80%계층 : 300만원
  - 상위 20% 계층 : 400만원

● 봉안

(奉安, enshrinement)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봉안당

(奉安堂, charnel house)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봉안시설

(奉安施設, charnel facilities)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가가치기준

(附加價值基準,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value added test)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제조·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여기에는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부가가치기준)와 'VAR(Value Added Ratio : 역외부가가치비율)'이 있음. RVC는 미주지역에서, VAR은 유럽지역에서 사용
- 어떤 상품의 부가가치가 어느 수준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예를 들면, 글리세린(60\$)을 가지고 핸드크림(100\$)을 생산했을 경우, 40\$의 부가가치가 발생(부가가치 40% 기준일 경우) 하여 원산지로 인정

## ● 부랑인

(浮浪人)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 부랑인 복지시설

(浮浪人福祉施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부속서

(附屬書, Annex)

협정문의 일부로서 협정문 중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기재한 문서로 협정문의 일부이므로 협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양허안, 유보안 등이 부속서에 포함된다.

## ● 부양가족연금액

(扶養家族年金額, Dependants' Pension Amount)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서,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및 특례),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만,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

녀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 2009년 현재, 배우자는 연 214,86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43,220원 지급

## ● 부양의무자

(扶養義務者,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②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 ● 부자 공동생활가정

(父子共同生活家庭, group home for single-father families)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부자가족

(父子家族, single-father families)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 부자보호시설

(父子保護施設, care facility for single-father families)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부자자립시설

(父子自立施設, self-support facility for single-father families)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부적격혈액

(不適格血液, Ineligible blood)

채혈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분권교부세

(分權交付稅,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분권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교부하며 '05년도에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면서 지방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과도기적 재원이전 제도로 내국세의 0.94%( '08년 기준 12,595억원)의 재원으로 운영하며,

- 경상적 수요는 예산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이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노인복지(10개사업), 장애인복지(20개 사업), 아동복지(10개 사업), 그밖의 복지(13개 사업) 로 구성,
- 비경상적 수요는 매년 관계부처의 심사 및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정한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일반수요(8개 사업)와 특정수요(6개사업)로 구성

### ● 분묘

(墳墓, Grave/Tomb)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분산형 통계제도

(分散形 統計制度)

통계활동이 각급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작성하는 통계제도로서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비관세장벽

(非關稅障壁, NTBs : Non-Tariff Barriers)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한다.

- ①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 할당 등)
- ②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

### ● 비정형통계

(非定型統計, Ad-hoc Report)

비정기 보고 등, 불특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형식이 바뀔 수 있는 통계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私立學校敎職員年金, Teachers Pension)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1975년 시행된 공적연금제도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교직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 사망일시금

(死亡一時金, Lump-sum Death Payment)

사망일시금제도는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성격을 갖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95.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 사실

(事實, Fact)

데이터마트의 목적별 결과 조회 시, 결과에 해당되는 데이터

- 예) “성별에 따른 연간 보건사업 실적” 조회 시, 보건사업 실적을 사실(팩트)로 명명

### ● 사업수행기관

(事業修行機關)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참여자 관리와 사업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 ● 사업장가입자

(事業場加入者,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납부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이거나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는 법인의 이사,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사용되거나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사용량-약가 연동제

(使用量-藥價 聯動制, price-volume agreement (PVA))

약가협상 시 제약사에서 제시한 예상 사용량보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급여기준 개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 ● 사용자 헬프 데스크

(UHD : User Help Desk)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유선, 원격지원 등을 통한 지원 활동

● **사이버윤리지수**

(사이버倫理指數, cyber ethics index)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포털, 게임, 쇼핑몰 사이트 등)의 사이버윤리 수준을 진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말한다.(2006년 6월 개발)

- 객관지표, 업체 자체평가지표, 이용자평가지표로 구성

● **사적연금제도**

(私的年金制度, Private pension Scheme)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것으로 민간 보험회사 등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자유롭고,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료 납부 수준에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사적이전소득**

(私的移轉所得, Private Transfer Income)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사회공헌정보센터**

(社會貢獻情報센터, Community Relations Center)

기업과 NGO 등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설립된 기관

● **사회보장**

(社會保障, Social security)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개

념은 상이한 여건과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 및 사회구성원의 최저 생활 보장(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제도로는 국민의료보험·실업보험·직업재해보상법·아동보호수당·출산급부·맹인부조·불구수당·노령연금·폐질연금·유족연금·퇴직연금·사망급부·주택부조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협정**

(社會保障協定, Social Security Agreement)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증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 과 '보험료면제 협정' 으로 구분된다.

● **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복무제도**

(社會服務制度, Social Service System)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



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 ●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센터

(社會福祉 自願奉仕 認證센터, Social Welfare Volunteer Managemen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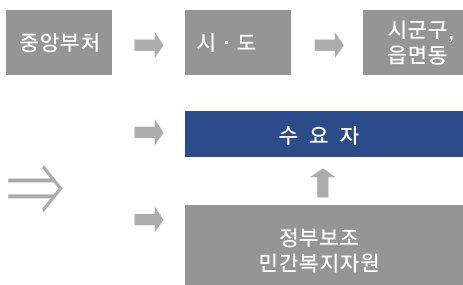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의 봉사지도·실적관리·일감 발굴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관리조직으로 2008년 현재 약 5천여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 자원봉사 인증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 ● 사회복지 전달체계

(社會福祉 傳達體系,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사회복지 관련 정책 또는 제도가 집행되어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흐름을 포함한 관련 조직들 간의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조직적 연결임

○ 사회복지 전달체계 흐름



- 정부보조 민간시설 : 민간이 운영주체인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며 복지서비스 제공
- 정부미지원 민간복지자원 : 민간이 운영주체인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운영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社會福祉共同募金會, Community Chest of Korea)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98. 11.)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모금재원의 배분·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2008년 모금액 : 2,703억원
- 2008년 배분액 : 2,503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 ● 사회복지관

(社會福祉館, Social welfare centers)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사회보호,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사회복지사

(社會福祉士, Social Worker)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등급은 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 자격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발급되며, 2급 자격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발급되며, 3급 자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 사회복지사업

(社會福祉事業, social welfare work)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 사회복지서비스

(社會福祉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s)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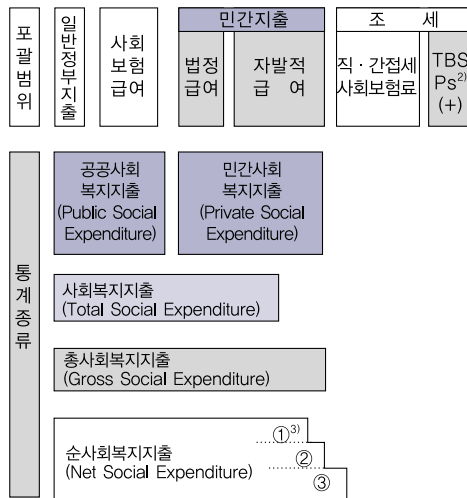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 사회복지지출

(社會福祉支出, Total Social Expenditure)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지출항목은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로 분류됨

○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 주: 1) Tax :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 비영리법인재산·근로자소득공제·지방세감면대상자·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 등에 대한 조세혜택  
 3) ①은 Tax > TBSPs, ②는 TBSPs = Tax, ③은 TBSPs > Tax 임.

### ● 사회복지서비스

(社會서비스, Social service)

-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②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정부는 '06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확충해 오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09년 현재 8개 부처에서 총 45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보건복지가족부 19개 사업)이다.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社會서비스,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전자바우처란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부터 비용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새울행정시스템, 바우처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전용단말기, 동글이, 인터넷결제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결제 및 정산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2008. 12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돌봄비, 지역사회서비스, 가시간병방운도우미,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이 있다.

### ● 사회서비스선도사업

(Social Service Venture)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 산업을 의미하며, 신규·고부가가치형(전문지식 기술을 활용하거나, 교육여행 등 유관분야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서비스)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발굴·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 사회안전망

(社會安全網, Social safety net)

개인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뒤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회적 무기력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경제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 ● 사회서비스 일자리

(社會서비스 일자리, social service job)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등)를 말한다.

### ● 산후조리업

(產後調理業)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입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 ●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者, The living exeping brain dead)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相對價値點數 및 換算指數,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and Conversion Factor)

- 상대가치점수 :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 행위의 가치(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를 각 행위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를 금전화한 것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말한다.

## ● 생계급여

(生計給與, Livelihood Benefits)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생명과학기술

(生命科學技術, Bioscience Technology)

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생물 의약품

(生物醫藥品, biopharmaceutical)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 생물테러전염병

(生物테러傳染病, Contagious disease related to biological terror)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生物學的同等性試驗, Bioequivalence Study)

생동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 생산가능인구

(生産可能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인구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text{○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 \frac{\text{생산가능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 ● 생식건강

(生殖健康, Reproductive Health)

생식기계통과 그 기능 및 변화과정에서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 생약

(生藥, Herbal medicine)

천연으로 생산된 자연물을 간단히 가공 처리한 것으로 의약품이나 의약품료로 사용된다.(녹용 등과 같은 한약재)

## ●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DoS)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리소스를 부족하게 하는 공격. 특정 서버에게 수많은 접속 시도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버의 TCP 연결을 바닥내는 등의 공격이 이 범위에 포함.

- 통상적으로 DoS는 유명한 사이트를 상대로 이루어짐. 2002년 10월 22일과 2007년 2월 6일의 DNS 루트 서버에 대한 DNS 백본 DDoS 공격은 인터넷 URL 주소 체계를 무력화시켜 인터넷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음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oS, DDoS)는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

##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S : General Agreement on Services)

각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출범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시 서비스 분야의 국제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체결

## ● 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 방식

(서비스 및 投資分野 市場開放 方式)

- 'Negative 양허방식' : 사전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 및 규제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한-미 FTA 등)
- 'positive 양허방식' : 개방할 분야 및 규제조치를 사전에 열거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한-EU FTA 등)

## ● 선별(등재)목록

(選別(登載)目錄, Positive list)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을 말한다.

## ● 선별등재제도

(選別登載制度, Positive system)

허가 의약품 중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등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선천성 난청

(先天性 難聽, congenital hearing loss)

태어나면서부터 청각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청력(聽力)이 저하되거나 소실된 상태(신생아 1천명당 1~3명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등 발생률이 높다.)

## ● 선천성 대사이상

(先天性 代謝異常,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영양 물질을 섭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생성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페닐알라닌혈증(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등

## ● 선천성이상아

(先天性異常兒, Congenitally deformed baby)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선천성이상아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모자보건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아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①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②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③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모자보건법」 제2조 〉

## ● 선택병의원 제도

(選擇病醫院)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대신 수급권자가 자주 방문하는 병의원을 한군데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합질환으로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 포함)을 추가로 선택하여 진료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 ● 선택진료제도

(選擇診療制度, Optional medical care system)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19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1963년 특진제도 도입, 1991년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2000년 9월 선택진료제도로 변경되었다.

## ● 설립

(設立, Establishment)

한-EU FTA, 한-GCC FTA에서 투자를 일컫는 말

- 단, 투자 중에서도 자본직접투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간접투자의 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협정문 대상이 아님

## ● 성매매 대상 청소년

(性賣買對象 青少年, sexually exploited adolescent)

대가를 전제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한다.

## ●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性犯罪 申告義務 制度)

아동·청소년대상(0~18세)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학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함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性犯罪者 就業制限制度)

아동·청소년대상(0~18세) 성범죄자를 학교, 아동시설, 보육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체육시설 등에 10년 동안 근무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 성분명처방

(成分名處方, prescription by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명칭(예 :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의사는 처방전 발행시 의약품 명칭으로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다.

## ● 성적 학대

(性的虐待, Sexual abuse)

- ①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서 하야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③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 세번변경기준

(稅番變更基準,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통합품목분류표)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코드)과는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2단위세번변경(CC, 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 4단위세번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인정
- 6단위세번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인정
  - 예1) 헝가리산 냉동돈육(HS 1230)을 국내 수입하여 소세지(HS 1601)를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12단위에서 16단위로 변경) 소세지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2단위변경)
  - 예2) 의료기기 치과용 촬영기기(9022.13)를

내·외과용촬영기기(9022.14)로 제조할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 6단위세번변경을 기준할 때 원산지 인정

## ● 소득인정액

(所得認定額, recognized amount of income)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 소득평가액

(所得評價額, evaluated amount of income)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함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水弗事業, Water Fluoridation)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구강보건법」 제2조 >

## ● 수련병원

(修練病院, Training Hospitals)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이다.

● 수련보조수당

(修練補助手當, Resident Training subsidy)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전문과목 수련 전공의에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

● 수목장림

(樹木葬林, Natural Burials fores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입목, 입도, 암석지와 소택지 등)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수정

(受精, Fertilization)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인공수정 :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정자를 여성의 생식기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남성의 정자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체외수정(시험관아기기술) : 인공수정과 유사하나 몸 밖에서 수정(受精: fertilization)을 마친 후 여성의 몸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 수혈

(輸血, Blood transfusion)

치료 등을 위해 혈액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

● 수형분석도

(樹形分析圖, Decision Tree)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파악한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더불어 신청인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 이때, “심신기능상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방문조사로 파악한 기능상

태 5영역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8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도출된 점수를 합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 심신기능상태 5영역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 8개 서비스 군 : 청결서비스, 배설서비스, 식사서비스, 기능보조서비스, 행동변화대응서비스, 간접지원서비스, 간호처치, 재활훈련

● 슈어스타트

(Sure start)

영국의 빈곤가구 아동(0~14세, 특수교육 및 장애아의 경우 16세)을 위한 전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 지원서비스로,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병의원 등이 협력·연계하여 지역의 필요와 부모들의 욕구에 기반한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 서비스, 취약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市郡區廳長에 의한 入院, Hospitalization by Local Government)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신청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따라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 입원초치하는 절차로, 입원기한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 시간가중수익률 및 금액가중수익률

(時間加重收益率 및 金額加重收益率)

- 시간가중수익률 : 운용자의 운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각 기간의 투자금액은 고려



하지 않고 세부 기간별 수익률을 구한 후 세부 기간별 수익률을 복리로 누적한 수익률이다.

- 금액가중수익률 : 투자자가 실제로 획득한 수익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매시점마다의 투자금액이 만기까지 달성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 초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말에 전체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시간가중 수익률과 금액가중수익률이 동일하게 되지만, 투자와 회수활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수익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분	시간가중 수익률	금액가중 수익률
개념	- 투자금액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기간마다 수익률을 계산한 후 각 기간별 수익률을 기하누적한 값	- 모든 현금유출입의 현가의 합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개념
기본 가정	- 기금에 현금 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펀드 수익률을 계산 - 투자자금의 중도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을 제거	- 기초 및 기준의 모든 현금흐름이 결과적으로 일정한 수익률(내부수익률 : IRR Internal Rate of Return)로 성장했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수익률
장점	-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세분하여 구간 수익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펀드의 수익률을 왜곡하는 현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음 - 평가하는 데 가장 공정한 방법	-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효율성을 가장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단점	- 누적운용 총량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급속도로 증가 혹은 감소될 경우 자금량과 관계없이 수익률이 계산되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과대 혹은 과소 계산될 수 있음 -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 최초 및 최종의 자산규모, 신규자금의 유출입 시기에 의해 수익률이 영향을 받음 - 내부수익률은 현금유출입의 시기나 기초자산 수익률의 움직임에 따라 구

## ● 식중독

(食中毒, food poisoning)

오염된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 등에 의하여 급성위장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식중독 주증상은 구토·설사·복통·두통 등이며, 때로는 호흡마비, 극도의 탈수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우리나라 집단식중독 관리의 환자 2명이 상 발생시부터 임)

### ○ 식중독의 종류

- 세균성식중독 :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 보툴리누스 등
- 자연독식중독 : 독버섯, 복어독 등
- 화학성식중독 : 농약, 첨가물 등

〈「식품위생법」 제2조〉

## ● 식품영양표시

(食品營養表示, Nutrition labeling of food)

영양표시는 식품표시항목 중의 하나로서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품영양 표시제도란 가공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포장에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허위, 과대표시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양표시를 아직까지는 모든 식품에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 ○ 식품영양표시 의무대상

- 특수영양식품,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잼류
-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식품위생법」 제2조〉



## ● 식품위생

(食品衛生, Food Hygiene)

- ①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 ②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 ③ WHO 환경위생전문위원회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식품위생의 범위를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완전무결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 〉

## ● 식품이력추적관리

(食品履歷追跡管理, Traceability of Foods)

식품을 제조 ·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 〉

## ● 식품첨가물

(食品添加物, Food Additives)

- ① 식품을 제조 · 가공 · 보존할 때 보존성의 향상, 품질향상, 영양강화, 풍미 및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②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

가 · 혼합 ·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③ CODEX에서는 영양가에 관계없이 식품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며 그 자체를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 저장 · 수송 · 포장 · 충전 · 조제 · 가공 · 제조에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혹은 첨가한 그 물질자체나 그 부산물(by products)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양의 질적 향상이나 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물질이나 오염물질은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④ 미국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서 식품의 생산 · 제조 · 충전 · 가공 · 조제 · 처리 · 포장 ·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식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 ⑤ EU에서는 식품으로서 그 자체를 소비하지 않고 영양과 관계없이 식품에 구성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써 제조 · 포장 · 운반 · 보관시에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될 때 그 식품자체나 식품의 구성성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

## ● 식품표시

(食品表示, Food labelling)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범

률에 근거하여 표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 일반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 식품위생법
- 축산식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친환경농수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 유기농식품 : 식품산업진흥법
- 주류 : 주세법
- 용기·포장재질표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표시사항 ]

- ① 제품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함)
- ②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③ 업소명 및 소재지
- ④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⑤ 유통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함)
- ⑥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함)
- ⑦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
- ⑧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⑨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⑩ 기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식품위생법」 제10조〉

## ● 신생아

(新生兒, Newborn baby)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 ● 신생아집중치료실

(新生兒集中治療室,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 및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곳을 말한다.

## ● 신약

(新藥, New medicine / New drug)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 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 ● 신의료기술평가

(新醫療技術評價, New medical technology review)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 도입되는 시점에서 국가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기술이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 신종인플루엔자(PI)

(新種毒感, Pandemic influenza)

H1N1 또는 약칭하여 신종플루라고도 한다.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서 2009년 4월 처음 발견되었다. 기존의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하여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신체적 학대

(身體的虐待, Physical abuse)

- ①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②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

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③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탈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 등

### ● 실명인증

(實名認證, Real-name Authentication)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 입력된 개인정보는 본인 인증 후 사라지며,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

### ● 실종가족지원

(失蹤家族支援, Supporting the family of missing children/disabled)

실종발생 후 실종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의료·부모활동·수색수사·전단지를 지원하여 실종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 실종아동전문기관

(失蹤兒童專門機關,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와 복귀후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심뇌혈관질환

(心腦血管疾患, Cardiovascular Disease · Cerebrovascular Disease)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말하며 심장질환은 인체의 혈액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성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고,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써 발증 형태에 따라 두 개 내의 혈관 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과 혈관 속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구별된다.

- 허혈성 심장질환 :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으며 관상동맥의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심근에 대한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까닭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 심장장애를 말한다.
- 기타 심장질환 :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음. 심부전이란 정맥계를 거쳐 심장에 되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구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DNR, Do-Not-Resuscitate)

말기 환자가 심장정지나 호흡정지의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이나 호흡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 ~ 흥, 1~4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 아동

(兒童, Child)

①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조〉

②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 아동·청소년

(兒童·靑少年, Children·Youth)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兒童·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아동급식

(兒童給食, Meal Services for Children)

가정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행위

## ● 아동보호치료시설

(兒童保護治療施設, treatment and protection facility for children)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아동빈곤율

(兒童貧困率, Child poverty rate)

18세 미만 아동 중 빈곤한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며 빈곤가정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절대빈곤율(가구원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과 상대빈곤율(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 있음

## ● 아동수당

(兒童手當, Child allowance)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or family benefit)이라고도 불림. 지원 유형별로는 보편주의형, 고용제도와 연계형, 고용과 공공부조 혼합형, 보편주의형과 공공부조 혼합형 등이 있음

##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兒童安全事故死亡者數, accident mortality among children)

교통·추락·익사·화상 등의 안전사고로 1년

동안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을 말한다.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兒童 靑少年 對象 身上情報 登錄·閱覽 制度)

아동·청소년대상(0~18세) 성범죄자는 사진, 주소 등 세부신상정보를 10년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며, 이들 중 법원에서 열람명령이 선고된 자는 5년간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분	등록 제도	열람 제도
등록 기간	10년(형 집행 종료 후)	5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열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li> <li>•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li> <li>• 13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li> <li>•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li> </ul>
등록·열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li> <li>③주소 및 실제거주지</li> <li>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li> <li>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명 ②나이</li> <li>③주소 및 실제거주지</li> <li>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li> <li>⑤사진 ⑥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li> </ul>
열람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li> <li>• 시·군·구내 거주하는 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li> </ul>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 및 제37조〉

### ● 아동학대

(兒童虐待, Child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遺棄)와 방임(放任)을 말한다.

○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에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91

〈「아동복지법」 제2조〉

### ● 아이돌보미서비스

(temporary child care service)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일시·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아이사랑카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보육료 지원 아동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바우처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할 수 있는 전자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의 유형이 있음)를 말한다.

### ●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사망 과정에 있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안전용기·포장

(安全容器·包裝, safety container or package)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및 「화장품법」 제2조〉

### ● 알코올상담센터

(Counseling center for alcoholics)

지역사회에서 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에게 음주폐해 예방, 알코올로 인한 질환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알코올자조모임(A.A)

(Alcoholics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암 사망률

(癌 死亡率, cancer mortality rate)

인구 10만 명당 각종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 암 유병률

(癌 有病率, cancer morbidity rate)

주요 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에 대한 유병률을 말한다.

- 유병률(有病率) : 한 시점을 기준하여 인구집단 내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

● (암)상대생존율

(相對生存率, Relative Survival Rate)

암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을 말한다.

● (암)연령표준화발생률

(年齡標準化發生率,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연령표준화발생률 :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 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 (암)발생률

- 연령표준화발생률 = 
$$\frac{\sum(\text{연령군별 발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 (암)조발생률

(粗發生率, Crude Incidence Rate)

조발생률 : 해당 관찰기관동안 특정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일반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발생하는 암환자수로, 소아암의 경우는 1,000,000명당 발생하는 암환자수로 나타냄)

- 조발생률 = 
$$\frac{\text{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00 \text{ (또는 } 1,000,000)$$

● 암호화

(暗號化, Cryptography)

암호화한 정보를 전달과정에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경우 암호화하기 이전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양방향암호화 : 암호화한 정보를 복호화하여 암호화하기 이전의 정보를 취득하는 암호화 방식
- 단방향암호화 :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정보를 암호화한 이후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유일한 값으로 변환함. 복호화하여 이전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음

● 약국

(藥局, Pharmacy)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약사법」 제2조 >

● 약물전달시스템

(DDS, Drug Delivery System)

약효가 있는 물질을 치료부위로 이동시키는 기술로 약리학적으로 활성을 갖는 물질을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

취하도록 세포, 조직, 장기 및 기관으로의 전달을 제어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 ● 약사

(藥師, Pharmacist)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

###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藥劑給與調停委員會,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Mediation Committee)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상한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위원회다.

### ● 양허안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각국의 서비스 陽虛案)

- ① positive list 방식, 양허된 부분만 기재하고 제한사항 기재, 모든 규제를 모두 사전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상 주요 의무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무에 위배되는 유형의 규제조치만 사전 열거 요구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보장(MA), 현지주재 요건 부과 금지 의무(LP), 이행의무 부과 금지(PR), 회사 고위경영자 및 이사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SMBD)가 여기에 해당
- ② 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어떤 상품 혹은 어느 서비스를 개방하는 지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을 의미한다. FTA 상품양허에서의 양허란 자

국의 관세를 언제, 얼마만큼 철폐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약속한다는 의미다.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食品安全保護區域, Green Food Zone)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하며, 동구역안의 우수판매업소나 학교 등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등이 금지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 여성복지관

(女性福祉館, Welfare Facilities for Women)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역내부가가치기준

(域內附加價值基準, RVC:Regional Value Content)

어떤 제품에 대해 역내(域內)에서 부가된 가치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인정하는 기준

### ● 역외가공

(域外加功,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 ● 역외부가가치비율

(域外附加價值比率, VAR : Value Added Ratio)





### ●연계노령유족연금

(連繫老齡遺族年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유족연금액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1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연계퇴직연금

(連繫退職年金)

연계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계급여 중 직역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직역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에 산정한 퇴직(퇴역)연금액이 지급되고, 직역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에 직역 재직기간 1년당 2%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연계퇴직유족연금

(連繫退職遺族年金)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의 70%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연금보험료

(年金保險料, Contributions)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가입기간동안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말하며, 연체금,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 ●연금보험료율

(年金保險料率, Contribution Rates)

소득중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소득은 근로수입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운영수입중 필요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소득의 3%부터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는 9%를 적용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당시인 1988년에는 3%를, 1993년 6%로 조정한 후 1998. 1월부터는 9%를 적용하여 반분하고 있다. 다만, 1993년부터 1999년 3월까지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3씩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퇴직금전환금(1999년 4월 폐지)에서 충당하여 납부하였다.

○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1995. 7월~2000. 6월까지 3%를 적용하였고, 그 이후 매년 1%씩 조정하여 2005. 7월부터 9%를 적용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

(年度別 再評價率, Annual Revaluation Rate)

재평가율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값이다.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

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물가 및 소득상승 등에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 예를 들어, 1988년 당시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09년 4월부터는 재평가율 4.675를 적용하여 1988년의 기준소득월액을 4,675,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한다.
- 재평가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그 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새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 이와는 별도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2009. 4~2010. 3월분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4.7% 인상하여 지급)

### ● 연령금기

(年齡禁忌)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 ● 연명치료 중단

(延命治療 中斷,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단순한 연명치료에 불과한 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품

위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영아사망률

(叛兒 死亡率, Infant mortality rate)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중에 만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의 천분비로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영아사망률이 감소하므로 국민보건 상태의 측정지표로 널리 사용됨(당해 연도의 출생아수 1천 명 당 1세 미만의 사망아수)

○ 영아사망률 =

$$\frac{\text{특정연도의 1세 미만의 사망아수}}{\text{당해연도의 연간 총 출생아수}} \times 1000$$

### ● 영양개선

(營養改善, Nutritional Improvement)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 영유아

(嬰幼兒, Infant / Young children)

①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②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AEFI)

(豫防接種後 異狀反應,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예탁

(預託)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용을 병의원 등에 지급하기 위해, 시도 의료급여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 ● 오송생명과학단지

(五松生命科學團地, Osong Bio - Health Science Technopolis)

보건의료·생명과학기술을 새로운 국가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정부(보건복지가족부)주도로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생명과학단지(4,634천㎡)로써,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BT대학원 및 연구기관, BT와 관련된 첨단기업체의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해 산·학·연·관이 상호밀접하게 연계되어 신약개발 등을 추구하는 바이오전산업단지(바이오클러스터)임

## ● 완전노령연금

(完全老齡年金, Full Old-age Pension)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는 60세('09년 현재 60세, '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조정되어 '13~'17년까지 61세, '18~'22년까지 62세, '23~'27년까지 63세, '28~'32년까지 64세, '33년부터는 65세)가 된 때부터 살아있는 동안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말한다.

## ● 완전생산기준

(完全生產基準, WOR : Wholly Obtained Rule)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개의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 완전통산방식

(完全通算方式)

공적연금 간 연계방식 중 하나로, 연금수급권자가 이전에 가입한 제도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가입한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 ● 외국 민간원조단체

(外國 民間援助團體, Foreign Nongovernmental Aid Organizations)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

## ● 요보호아동

(要保護兒童, Child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療養給與 適正性 評價, Quality Assessment)

요양급여를 “비용효과성 측면”과 “의약학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건강보험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 ●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療養給與費用, 公團負擔金 및 本人負擔金, Medical



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국가자격제도(자격증 발급주체 : 시·도지사)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 ● 요양비(療養費)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예) 산소치료 요양비(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등)
- 〈「국민건강 보험법」 제44조 및 「의료급여법」 제12조〉

###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優秀健康機能食品製造基準,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일컫는 말로,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으로 함.

### ● 우수심사기준

(優秀審査基準, GRP : Good Review Practice)

의약품 등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심사 자료에 대한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심사결과에의 일관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심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과정과 내용을 표준화하고 심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심사수준을 상향 평준화 하기 위한 규정이다.

### ●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 ● 원료물질

(原料物質)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원산지 규정

(原產地 規程, Rules of Origin)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나름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대외무역법에 이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 원산지 인정기준의 유형

(原產地 認定基準의 類型)

원산지 인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과 '실질적 변형기준' 으로 대별하며, 후자(실질적 변형 기준)는 '세번변경기준(CTC)' 과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으로 구별

### ● 웹 기반 공격

(基盤攻擊, Web-Based Attack)

웹사이트를 매개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시도하는 공격 방법. 대부분 공격자가 합법적인 웹사이트에 침입해 악의적 목적의 소프트웨어인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악성코드가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하여 사용자 컴퓨터를 악의적인 활동에 이용. 이런 웹 기반 공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 등 모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 중인 보안 제품 역시 항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 ● (웹)방화벽

기존 방화벽이 처리하지 못하는 웹을 공격하는 악성 트래픽을 제어하고 365일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웹 환경을 구축하는 솔루션

### ● 위기 청소년

(危機 靑少年, Youth at Risk)

학교·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危機靑少年教育센터, Education Center for Youth at Risk)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탈성매매를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치료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위생 및 식물검역(SPS) 협정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協定

WTO/SPS 협정은 SPS조치가 농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

- SPS 조치는 동식물 병해충 및 식품·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제도 등
- 사람,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 ● 위생관리용역업

(衛生管理用役業, Building cleaning service)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 위해

(危害, Hazard)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위해성 평가 :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危害要素 重點管理基準,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원료관리·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 대하여 중점관리기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 위험관리

(危險管理, Risk Management)

위험요소의 발견에서부터 위험요소의 최소화 및 제거를 위한 모든 관리체제

### ● 유기

(遺棄, Abandonment)

- ①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 무자가 버리는 행위
- ②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 ● 유보안

(留保案, Reservations List)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 협정문상 주요 의무조항으로부터 적용배제 필요성이 있는 분야 및 현존 규제내용을 미리 기재한 목록표

- '유보'(reservation)한다'라 함은 규제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 유스호스텔

(Youth Hostel)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유전자

(遺傳子, Gene)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 즉 형질을 만들어 내는 인자로서 유전정보의 단위, 그 실체는 세포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가 배열된 방식

### ● 유전자검사

(遺傳子檢査, Genetic testing)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전자정보 :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유전자 재조합 식품

(遺傳子 再組合 食品, 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 중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때 이를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한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遺傳子變形生物體, Living Modified Organism)

생명공학기술(유전자재조합, 세포융합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유채, 목화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이 상업화되고 있다.





## ●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應急醫療情報센터 1339, EMIC :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2008년 현재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해당 권역의 주민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권역 내의 응급의료기관(병원)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요원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조언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연중 무휴 24시간 국번 없이 1339번을 눌러 상담요원과 통화할 수 있으며, 무선전화(핸드폰, Cellular Phone)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1339를 눌러 이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응급의료종사자

(應急醫療從事者, Emergency Medical Personnel)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응급의료체계(EMSS)

(應急醫療體系, EMSS :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의학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병원 밖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에 부합한 사회안전보장 및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적정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

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즉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따라서 짧은 시간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 및 처치팀(119 구급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이송병원(응급의료센터) 및 병원 응급의료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 ● 응급입원

(應急入院, Emergency Hospitalization)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자가 경찰관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온 경우 의사에 진단에 입원하는 절차로 입원 기한은 72시간이며, 입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중 한가지 입원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6조〉

## ● 응급처치

(應急處置, Emergency Medical Care)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응급환자

(應急患者, Emergency Patients)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응급환자이송업

(應急患者移送業,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ervices)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의료급여

(醫療給與, Healthcare Benefits)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의료급여법」 제7조〉

### ● 의료급여 대불금

(醫療給與 代拂金, advance payment for medical assistance recipients)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시군구에서 미리 내주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법」 제20조〉

###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醫療給與本人負擔補償制, co-payment compensation system)

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醫療給與本人負擔上限制, co-payment limit system)

매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1종 5만원, 2종 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전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의료급여 상한일수

(醫療給與 上限日數, maximum number of days permissible for healthcare benefits)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한다.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질환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간 365일

### ● 의료급여관리사

(醫療給與管理使, medical benefits case manager)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시·군·구에 배치되어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의료급여기관

(醫療給與機關, Healthcare Facility)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의료급여기관 구분

- 제1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중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중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의료급여법」 제2조 및 제9조〉

### ● 의료급여기금

(醫療給與基金, Healthcare Benefits Fund)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25조〉

### ● 의료급여사례관리

(醫療給與事例管理, medical benefits case management)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지지체계 구축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접근하는 일련의 관리과정

### ● 의료기관

(醫療機關, Medical institution)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 의료기관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

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

### ● 의료기관 평가

(醫療機關 評價, Hospitals Review)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구조적인 부분, 의료서비스 제공절차와 성과, 환자만족 등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법」 제58조〉

### ● 의료기기

(醫療機器, Medical Devices)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예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제2조〉

### ● 의료기사

(醫療技士, Medical Engineer)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③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약사법」 제2조〉

### ● 의약품

(醫藥品, Medicines)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①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품이 아닌 것
-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리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약사법」 제2조〉

### ● 의약품 리베이트

(醫藥品 리베이트, Drug rebates)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한약사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 의약품 사용평가(DUR)

(醫藥品 使用評價, DUR : 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지, 연령금지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제도(시스템)를 말한다.

-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

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부작용을 최소화한다.

### ● 의약품표준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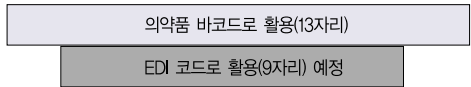
(醫藥品標準코드, KD코드 : Korea Drug Code)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의약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국가 식별코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하는 13자리 숫자를 말한다.

- 의약품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공유를 위하여 의약품 유통바코드와 보험청구코드인 EDI 코드 통합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공고

○ 의약품 표준코드 구성체계

3자리	4자리	5자리	1자리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880	6400-6999	0001-9999	0 : 대표코드(날일) 1-9 : 포장단위



[ 예시 ]

제약사명	의약품명	현, EDI 코드 (9자리)	표준코드 (13자리)	8806421022810
Y 제약	C 시럽	F00200011	바코드 (13자리)	8806421022810
			보험청구코드 (9자리)	642102281

### ● 이상치

(異常置, Outlier)

수집된 자료 중 다른 측정치에 비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아 부적합하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 인공수정

(人工受精, Artificial insemination)

남성의 정자를 주입기구를 이용하여 여성의 자





용되는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정액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 일반의약품

(一般醫藥品, Over the counter drug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①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②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③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약사법」 제2조〉

### ● 일상생활동작(ADL)

(日常生活動作,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중 가장 필요한 동작들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 ● 일시보호시설

(一時保護施設, Temporary care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일시입국 개방(양허)

(一時入國(temporary entry) 開放(陽虛))

양국간의 통상협상에서 개방을 약속하는 경우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비자발급심사에 있어 기존의 주권적 자유재량 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 필수적 신청서류에 특

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비자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변경 됨. 현재 비자 발급절차나 조건은 국내 규정(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여 비자 발급 거부가 용이하나, FTA 협정상 양허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제한을 받게 됨

### ● 임신부

(妊産婦, Pregnant or nursing woman)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

### ● 임상병리사

(臨床病理士, Medical Technologist)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임상시험

(臨床試驗, Clinical Trial)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약물의 임상적 효과와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 ● 임상진료지침

(臨床診療指針, Clinical practice guideline)

특정한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행하는데 있어 임상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을 말한다.

### ● 임상질지표

(臨床質指標, Clinical medicine Quality Index)

2007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에 도입된 지표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의 4개 부문에서 평가

### ● 임의가입자

(任意加入者, Voluntarily Insured Persons)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제가입자의 중간소득 또는 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합계액(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소득 적용)으로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임의계속가입자

(任意繼續加入者, Voluntarily and Continuously Insured Persons)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수리된 사람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납부기간이 적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에 가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수리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거나 전액 미납, 전제 납부예외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까지만 허용되지만 납부는 65세 이후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임의계속가입자제도

(任意繼續加入者制度, A scheme for the unemployed to keep status for 1 year as the employee insured)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 일정기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로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당시 직장보험료의 본인부담액 수준을 납부하게 된다.

- 적용대상 :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적용기간 :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 ● 입양

(入養, Adoption)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법적·사회적 과정을 거쳐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자산형성지원사업(IDA)

(資產形成支援事業,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소액의 저축을 해 나갈 경우 정부와 민간(기부금 등)이 추가로 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축을 통해 자활 의지가 확인된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 자신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 ● 자연사

(自然死, Natural death)  
말기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원인 상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 ● 자연장

(自然葬, Natural Burials)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자연장지

(自然葬地, Natural Burials yard)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자의입원

(自意入院, Voluntary Hospitalization)  
환자 본인의 신청과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입원하게 되는 보통의 입원 절차이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한다.  
〈「정신보건법」 제23조〉

### ● 자활공동체

(自活共同體, Self-sufficiency Community)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 자활근로

(自活勤勞, Self-Sufficiency Public Work)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이 있다.

### ● 자활급여

(自活給與, self-sufficiency benefits)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 작업치료사

(作業治療士, occupational therapist)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장기구득기관

(臟器求得機關, OPO :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잠재뇌사자(뇌사추정자) 발굴과 발굴된 잠재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기증의사 확인한 후 뇌사판정 → 뇌사자관리 → 장기적출 →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의 전과정을 One-Stop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 ● 장기기증 및 이식

(臟器寄贈 및 移植, Donation & Transplant of Organ)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뇌사자 장기적출의 합법화,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00.2.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과 골수, 각막 등
- 살아있는 자의 경우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간장은 일부 적출 가능, 췌장·심장·폐 등은 적출 금지

### ○ 장기적출 및 이식요건

- 살아있는 자 중 16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부모의 동의 후 허용

### ○ 나머지 살아있는 자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허용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기증을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지 않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적출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가족이나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家族 또는 遺族, Family Of Organ Donor)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내지 형제자매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장기등

(臟器等, organs, etc.)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예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각막,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장기등기증자

(臟器等寄贈者, Organ Donor)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장기등이식대기자

(臟器等移植待機者, Organ transplant waiting patient)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臟器等移植倫理委員會, Organ Transplant Ethics Committee)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장기등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 ● 장사시설

(葬事施設, Funeral establishment)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장애수당

(障礙手當, Disability Allowance)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함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 장애아동수당

(障礙兒童手當, allow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 장애연금

(障礙年金, Disability Pension)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 장애인 보조기구

(障礙人 補助器具, assistive technology de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의 보장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임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기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에 적용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

- 개인치료용구, 훈련용구, 의지·보조기, 개인위생·보호용구, 이동기기, 가사용구, 가구 및 건축물용 부대시설, 정보통신 신호기기,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레크리에이션 용구

- 현재 총 9개 품목 교부 : 욕창방지용 매트, 자세보조용구, 기립보조기구, 워커(보행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 시계

### ● 장애인

(障礙人, Persons with disabilities)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의 종류 :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간장장애인(肝障礙人),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癲癇障礙人)

〈「장애인복지법」 제2조〉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8.5.3 국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09.1.10일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은 전문과 본문 총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과 차별금지·교육·건강·근로·문화생활 등 장애인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과정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사무국에 제출함 (최초 2년, 이후 매 4년)

## ●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등록제도**,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 체계적 관리, 재활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8.11.1부터 전국적 장애인 등록제도 실시, 2009년 현재 15개 등록 장애유형으로 구성된다.

- 최초 시행(1988.11)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 1차 확대(2000. 1)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2차 확대(2003. 7) :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auxiliary device)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등 재활보

조기구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 장애인보조견

(**장애인보조견**, guide dog)

장애인의 각종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훈련된 장애인 보조 전문견을 말한다.

- 시각·청각·지체 및 정서장애 보조견 등 종류 다양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의 날

(障礙人の 날,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정부(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한다.

- 행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으며,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고 야외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

## ● 장애인의료비

(障礙人醫療費)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지원

## ● 장애인자녀교육비

(障礙人子女教育費)

저소득 장애인(1~3급)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

(障礙人長期療養保藏서비스, Long-term c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및 건강서비스를 말한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障礙人專用駐車區域, exclusive parking zon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

나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障礙人政策發展 5改年 計劃, five-year policy master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관련 부처의 장애인정책을 종합하여 향후 5년간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이 포함되며, 2008년 현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8~12)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障礙人政策調整委員會,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종합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정부 위원회를 말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와 13인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정책을 심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障礙人地域社會再活施設)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또는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 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職業再活施設,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差別禁止,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누구든지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차별의 유형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차별금지영역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오·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活動補助서비스, PAS, Personal Assistant Service)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활동보조인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티 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사람

### ● 장제급여

(葬祭給與, Funeral Benefits)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 재가노인복지시설

(在家老人福祉施設, In-home service agencies for the elderly)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

### ● 재범방지 교육

(再犯防止教育, Second Offense Prevention Education)

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자 및 등극대상자를 대상으로 40시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40조〉

### ● 재산의 소득환산액

(財産의 所得換算額, converted amount of property income)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재외동포

(在外同胞, Overseas Koreans)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 재정계산제도

(財政計算制度, Actuarial Valu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인구, 가입자수, 수급자수, 급여액, 징수율, 사망률, 탈퇴율, 급여 상실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들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연금재정의 장기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 ● 재제조품

(再製造品, Remanufactured Goods)

중고품(used goods)에서 분해되어 세척·검

사·시험 등을 거친 재생품(recovered goods)으로 구성되고, 신품과 유사한 내구성 및 성능을 가진 물품(※ 미국 및 EU 등은 재제조품과 신품의 비차별 주장)

## ● 재직기간

(在職其間, Service Period)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재직기간은 급여 산정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등 연금법상 여러 가지 수혜의 기준이 된다.

- 직역재직기간 :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재직기간 소급통산

(在職其間 遡及通算, Retroactive Career Summing-Ups)

직역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재직하였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경력자와 각 직역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역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중도부터 적용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급통산제도는 동일한 기관의 재직자 신분이면서도 제도 적용시점의 차이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적용전후의 재직기간에 대해 수혜의 형평을 기함과 함께 전반적인 급여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둔 특례제도이다.

## ● 재직기간 합산제도

(在職其間 合算制度, Incorporated system of Service Period)

퇴직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이 다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으로 임용되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과거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 가입 중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업 이동으로 인하여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2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직역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았던 재직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재직자노령연금

(在職者老齡年金, Active Old-age Pension)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에 도달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급여액은 60세에는 기본연금액 또는 감액노령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10%씩 지급율을 상향 조정하여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09년 현재, 월 1,750,959원 이상

## ● 저소득층

(低所得層, The low-income group)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 ● 저체중아출산

(低體重兒出產, Low birth weight)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아의 임신기간과 관계 없이 출생시 2,500g(5.5파운드)미만의 체중을 가진 신생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영아사망 가능성 증가에 대한 병리학적인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간 보건의료관련 통계 비교에 사용된다. 저체중아 수는 총 출생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低出產 · 高齡社會政策)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3조〉

### ● 전문요양기관

(專門療養機關, Specialized hospital)

병원급 이상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 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의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등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

### ● 전문의

(專門醫, specialist)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전문자격상호인정

(專門資格相互認定,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일방 협정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전문자격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대국 전문인을 면허 발급 등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자국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제도

○ 예를 들어 영국 의사가 호주 의사 시험을 볼 필요 없이 호주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 전염병병원체보유자(병원체보유자)

(傳染病病原體保有者, Contagious disease pathogen carrier)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전염병의사환자

(傳染病擬似患者, patient suspected of a contagious disease)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전염병환자

(傳染病患者, Patient affected by a contagious disease)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 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접근제한

(接近制限, Access Control)

보호할 대상에 대해 인가된 접근을 허용하고 비인가된 접근시도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 ● 정보 보안

(情報 保安, Information Security)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 정서적 학대

(情緒的 虐待, Emotional abuse)

- ①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②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③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 정신과 입원의 종류

(精神科 入院의 種類)

정신과 입원은 크게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구·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등 크게 4종류로 분류된다.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6조〉

## ● 정신보건시설

(精神保健施設, Mental health facility)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精神保健審議委員會, Mental Health Deliberative Committees)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각각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두며,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령의 제·개정, 중요 정책과 시설, 인력, 입원, 진료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의 감독과 평가 및 재심사청구사건을 심의하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계속입원치료 청구 및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을 심의한다.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

## ● 정신보건전문요원

(精神保健專門要員, Mental Health Specialist)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신설된 자격제도로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은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세 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신보건법」 제7조〉

### ● 정신요양시설

(精神療養施設, Sanatorium for treatment of psychopaths)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 ● 정신의료기관

(精神醫療機關, Medical institution for mental illness)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 ● 정신질환자

(精神患者, person with mental illness)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

###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精神患者社會復歸施設, facility for the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시설의 종류

-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기타 훈련시설

- 종합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 거 시설 :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 ● 정액수가 제도

(定額酬價 制度)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수가) 지불에 있어서, 질병에 따라 수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 행위별 수가제도(환자에게 제공한 시술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지불하는 제도)와 달리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알 수 있으며, 의료급여에서는 혈액투석·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정액수가 적용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진찰료·혈액투석수기로·투석액·약제 및 검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1회당 혈액투석수가를 정액수가로 정함
- 정신질환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1일당 정액수가로 정함

### ● 정형통계

(定型統計, Regular report)

보건기관에서 상위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미리 정해진 형식에 의거하여 산출하는 통계

### ● 제1군전염병

(第1群 傳染病)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을 말한다.(예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제2군전염병

(第2群 傳染病)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을 말한다.(예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제3군전염병

(第3群 傳染病)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예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찌꺼기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

천성면역결핍증(AIDS)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제4군전염병

(第4群 傳染病)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전염병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제네릭

(複製藥, Generic)

기허가 의약품과 성분, 제형,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 ● 조건부과제외자

(條件賦課制外者, The Recipients who exempt from the Self-Sufficiency)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가구·개인여건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를 말한다.

### ● 조건부수급자

(條件附受給者, conditional recipient/ self-sufficiency participant)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 조기노령연금

(早期老齡年金, Early Old-age Pension)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있는 업무\*에 중



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이전인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비율(1년에 6%씩)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며, 그 지급률은 55세부터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또는 감액노령연금)의 70%, 56세부터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또는 감액노령연금)의 76%, 57세부터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또는 감액노령연금)의 82%, 58세부터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또는 감액노령연금)의 88%, 59세부터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또는 감액노령연금)의 94%로 수급권자의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받게 된다.

조기퇴직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2009년 현재, 월 1,750,959원 이상

### ● 조류인플루엔자(AI)

(鳥類毒感, avian influenza)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은 해를 입힌다. 원인체는 A형 바이러스이며, H 혈청형과 N 혈청형이 있다.

### ● 조사망률

(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를 말한다.

- 조사망률(%) =

$$\left( \frac{\text{특정1년간의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right) \times 1,000$$

※ 연앙인구(年央人口) : 해당연도의 7월 1일자 인구로서 그 연도를 대표하는 인구

### ● 조사통계

(調査統計)

조사통계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관찰대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항목들의 집합되어진 성질과 관계를 갖게되며, 이를 얻기 위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센서스라고도 하며,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표본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대신 그 일부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진 조사이다.

### ● 조산사

(助産士, Maternity nurses)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의료법」 제2조 >

### ● 조세부담률

(租稅負擔率, Tax burden ratio)

조세수입이 GDP(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조세수입의 포괄 범위나 포착기준 등의 차이로 국민소득 통계상의 조세부담률과 재정 통계상의 조세부담률이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

- 조세부담률 =  $\left( \frac{\text{조세수입}}{\text{명목 GDP}} \right) \times 1,000$

- 국세부담률 : 국세부담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 존엄사

(尊嚴死, Death with dignity)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안락사의 형태이다.

## ● 종합병원

(綜合病院, General hospital)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각 과목마다 존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을 말한다. 300개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존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3조〉

## ● 종합전문요양기관

(綜合專門療養機關,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효율적 요양급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 매 3년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 ● 주거급여

(住居給與, Housing Benefits)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 ● 줄기세포

(Stem cell)

모든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한다.

- 배아줄기세포 : 정자, 난자의 인공수정을 통해 얻은 배아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핵이식(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여 얻은 배아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 성체줄기세포 : 분화가 끝난 조직 속에 섞인 극소량의 줄기세포를 분리해 사용
- 역분화 줄기세포(IPS) : 분화가 끝난 조직에 역분화 유전자, 단백질 등을 넣어 만든 줄기세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중복처방

(重複處方)

동일요양기관에서 의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을 복약일자가 중복되게 처방하는 것으로, 같은 진료과목에서 약 소진 전 조기에 처방하거나 다른 진료과목 간 중복하여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 ● 중복투약

(重複投藥)

환자가 동일상병으로 복수의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조제 받는 것을 말한다.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지난 2003년 3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 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 등으로 확산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다. 1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과 호흡곤란



## ● 지방의료원

(地方醫療院, Regional Public Hospitals)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지역가입자

(地域加入者,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연금을 확대하는 시기에 특례가입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도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2의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지역병상수급계획

(地域病床需給計劃)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수립한 병상수급계획을 말한다.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학교)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

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 ● 지역사회복지

(地域社會福祉, Community Welfare)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 지역사회복지계획

(地域社會福祉計劃)

복지관련 각종 중앙 및 상위계획을 통합하고 지역주민/시민들의 참여 등을 통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시설, 단체, 종사자 등)간의 연계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4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

## ● 지역사회서비스

(地域社會서비스, Community social service)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 복지수요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유형 : 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개발형(과잉행동장애(ADHD)조기개입서비스 등)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地域社會中心再活事業,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지역아동센터

(地域兒童센터, Community Child Center)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 ● 지역자활센터

(地域自活센터,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등을 수행한다.

## ●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도하선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남아프리카의 에이즈 창궐 등 개발도상국의 공중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WTO 회원국이 WTO 지적재산권 협정이 회원국의 공중보건 조치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선언을 채택하고, 국가적 긴급사태 등 위급한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허여 없이 국가가 특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인정

## ● 지정전염병

(指定傳染病)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 ● 직역연금

(職域年金, Public Occupational Pension)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診療審査評價委員會, Medical Treatment Review Committee)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회의기구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 집단급식소

(集團給食所, mass catering facility)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을 말한다.

○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의 급식시설 등은 집단급식소 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2조〉

## ● 집적법

(集積法, build-up method)

어떤 상품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직접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

○ 역내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물품가격}} \times 100\%$$

## ● 차상위계층

(次上位階層, near poor)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대상자

- 차상위계층(170만명, '06기준) = 차상위빈곤위협계층(67만명) + 비수급빈곤층(103만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차원

(Dimension)

데이터마트의 목적별 결과 조회 시, 목적에 해당되는 데이터

- 예) “성별에 따른 연간 보건사업 실적” 조회 시, 성별을 차원(디멘전)으로 명명

## ● 채혈

(採血, blood collection)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채혈금지대상자

(採血禁止對象者, An ineligible person for blood donation)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處方總額 節減 賞與金 制度, incentive scheme to reduce total prescribed drug expenditure)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 ● 천연물

(天然物, Natural Products)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 ● 천연물 성분

(天然物 成分, Natural Products Ingredient)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 ● 천연물과학

(天然物科學, Natural Products Science)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 ● 천연물의약품

(天然物新藥, Natural Products Drug)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 ● 청소년

(靑少年, Youth)

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도 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청소년교류활동

(靑少年交流活動, youth exchange activities)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단체

(靑少年團體, Youth Organization)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靑少年同伴者 프로그램, Youth Companion Program)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청소년문화의집

(靑少年文化의집, Youth Cultural Center)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문화존

(靑少年文化존, Youth Culture Zone)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 일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 창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의 일정한 범주의 지역적 공간을 말한다.

### ● 청소년문화활동

(靑少年文化活動, Youth Cultural Activities)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靑少年放課後아카데미, Youth After-school Academy)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청소년보호

(靑少年保護, Youth Protection)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복지

(靑少年福祉, Youth welfare)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성문화센터

(靑少年性文化센터, SAY: Sexuality About the Youth)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성교육 전시관

### ○ 역할

-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 ○ 주요사업 내용

-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설치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 청소년수련거리

(靑少年修練거리, Youth Programs)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수련관

(靑少年修鍊館, Youth Community and Activity Center)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수련원

(靑少年修鍊院, Youth Outdoor Activity Center)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수련활동

(靑少年修練活動, youth training activities)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청소년쉼터

(靑少年쉼터, Youth shelter)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을 말한다.

## ●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靑少年스스로지킴이, Youth Patrol(YP)]

청소년이 스스로 주위 생활환경 속 유해한 요소(업소, 약물, 물건, 매체물등)를 변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모니터링, 캠페인 및 권리 신장 활동을 말한다.

○ YP 연구학교와 청소년 동아리를 통해 활동

## ● 청소년시설

(靑少年施設, youth facility)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야영장

(靑少年野營場, Youth Camp Ground)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 ● 청소년유해매체물

(靑少年有害媒體物, Harmful Media Content for Youth)

내용의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물로서, 관련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청소년 대상 유통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매체물을 말한다.

### ○ 매체물의 범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및 기타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및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

## ●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靑少年有害媒體物 特定告示, Specific Notification of Harmful Media Content for Youth)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개별 고시로는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매체물의 제목·종류·내용을 특정하여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예 : 불법 성매매알선 전화광고,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등)

## ● 청소년유해물건

(靑少年有害物件, Harmful Stuff for Youth)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완구류 등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 제2조〉

## ● 청소년유해약물

(靑少年有害藥物, Harmful Drug for Youth)

「주세법」, 「담배사업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법」 제2조〉

### ● 청소년유해업소

(靑少年有害業所, Harmful Establishment for Youth)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 ● 청소년유해행위

(靑少年有害行爲, harmful acts against youth)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시키며, 호객행위 시키는 행위 등)

### ● 청소년육성

(靑少年育成, Youth Development)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지도자

(靑少年指導者, Youth Worker)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참여위원회

(靑少年參與委員會,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

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참여기구를 말한다.

### ● 청소년특별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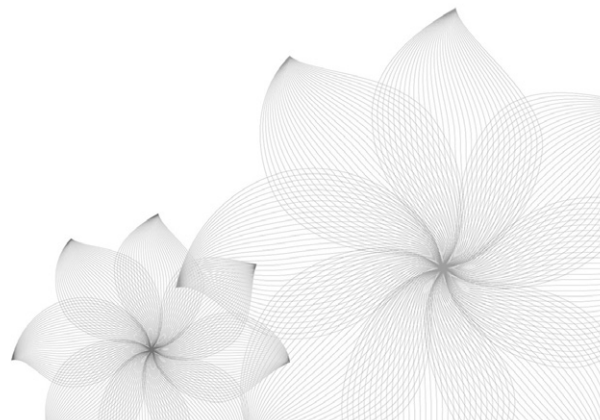
(靑少年特別會議, National Youth Congress)  
전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 청소년특화시설

(靑少年特化施設, Youth-specific Activity Center)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한다.

### ● 청소년활동

(靑少年活動, Youth Activities)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 청소년활동시설

(靑少年活動施設, facility for youth activities)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 체납처분

(滯納處分, disposition on default)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

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 체외수정

(體外受精, in vitro fertilization)

배란유도제를 이용하여 배란직전의 성숙한 난자를 채취하여 정자와 시험관에서 혼합하여 수정시킨후 2~5일의 배양과정을 거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내에 이식하여 착상을 유도하는 불임치료 방법을 말한다.

## ● 초고령사회

(超高齡社會, Super-aged society)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도 하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 ● 최소가공기준

(最小加功基準, Minimal Operations)

세 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 최신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cGMP)

(最新優秀醫藥品製造管理基準, cGMP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미국 FDA가 적용하는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으로 의약품의 안정성(safety), 안정성(stability), 유효성(efficacy)을 품질 면에서 보

증하기 위한 최신 우수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이다.

### ● 최저생계비

(最低生計費, Minimum cost of living)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표하며, 이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원/월)

가구규모	금 액	가구규모	금 액
1인	490,845	4인	1,326,609
2인	835,763	5인	1,572,031
3인	1,081,186	6인	1,817,4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追跡管理對象 醫療機器)

인체안에 1년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중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중에 사용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 출산율

(出產率, Fertility Rate)

인구대비 출생아수의 비율을 말한다. 조출산율은 전체인구대비 출생아수의 비율이며, 일반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대비 출생아수 비율이다.

### ● 치과기공사

(齒科機功士, Dental technologist)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치과위생사

(齒科衛生士, Dental hygienist)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치매

(癡呆, Dementia)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뇌 질환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 ● 치매유병률

(癡呆有病律, Prevalence of Dementia)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치매환자수의 비율

### ● 치매조기검진

(癡呆早期檢診, early screening of dementia)

치매를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 발견, 관리하기 위하여 검진 실시(보건소와 거점병원의 연계를 통하여 3단계 검진 실시)



## ● 크로스 라이선싱

(Cross Licensing)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이나 독점을 목적으로 이용한다.

## ● 통계

(統計, Statistics)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다.

## ● 통계간행물

(統計刊行物)

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 ● 통계작성기관

(統計作成機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통계청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계법」 제3조 및 제15조〉

## ● 통합관세율표

(統合關稅率表, Harmonized System Code)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의 명칭 및 관세율을 Code화하여 체계적으로 만든 것으로, 통합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2단위(류, chapter) > 4단위(호, heading) > 6단위(소호, subheading) > 8단위 > 10단위로 분류(2단위는 가장 상위개념의 품목구분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이 속함)

- 전세계적으로 공용되는 Code는 HS 6단위까지며, HS 8단위 및 10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상이
- 단위별 품목구분은 특히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협상시 사용되며, 관세철폐 협상에서는 보통 10단위로 양허안 수립

※ 예) 로열제리제제는 3004 90 95 00  
(2006년 기준)

## ● 퇴직급여

(退職給與, Retirement Benefit)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이에 해당한다.

## ● 투자자·정부간 제소 ISD

(投資者·政府間 提訴,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음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 특례노령연금

(特例老齡年金, Special Old-age Pension)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88.1.1.) 또는 농어촌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때('95년)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다던 가입자와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당시('99.4.1.)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다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조치적 노령연금이다. 이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하여 당시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고령의 가입자에게 급여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특별지원청소년

(特別支援靑少年, youth in need of special support)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 ● 특정수혈부작용

(特定輸血副作用, Transfusion-transmissible infection)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파랑새포럼

(Blue Bird Forum)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민·관이 연대한 정책공동체로서 소비자연맹, 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보건협회, 주류산업협회 등 15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 ● 파랑새플랜 2010

(Blue Bird Plan 2010)

건전음주문화조성, 음주폐해 예방, 알코올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년에 수립된 국가알코올종합계획을 말한다.

### ● 편의시설

(便宜施設,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대상시설 :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 편의시설 종류 : 주출입구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접수대, 점자블럭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 평균보수월액

(平均報酬月額, The Average Monthly Salary)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퇴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평균소득월액

(平均所得月額, Average Monthly Income)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을 말한다.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금급여가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연금수급 당시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

### ● 평균수명

(平均壽命, Life expectancy at birth)

특정년도의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즉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주어진 일련의 연령별사망률에 기초하여 인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사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 ● 포괄수가제

(包括酬價制, DRG : Diagnostic Related Group)

의료보장제도하에서 보험자 또는 정부가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중 각각의 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건(case)별로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 ● 포자법

(炮炙法, Stir-bake at high temperature or stir-bake with adjuvant)

한약재를 조제하기 전이나 각종 제형으로 만들기 전에 가공하는 과정으로 한약재를 불에 굽거나 찌고, 발효하고, 초에 담그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성을 제거하거나 효능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 ● 포털

(Portal)

월드와이드웹에서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뜻한다. 포털(Portal)이라는 단어는 본래 '정문' 또는 '입구'를 뜻하는 단어. 포털사이트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전자 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다음, 야후!는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 ● 표준인구

(標準人口, Standard Population)

연령군을 0~4, 5~9, -, 80~84, 85세 이상 연령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표시한 표로 제시되며, 국가 혹은 세계 기준의 표준인구를 사용할 수 있음

### ●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제조·유통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이용자(저소득 취약계층)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부식품 제공시스템으로 양념류, 장류, 캔류, 라면 등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주로 제공

○ 2008년말 현재 푸드마켓 21개소 운영 중

### ● 푸드뱅크

(Food Bank)

식품제조기업,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 무료급식소 및 복지관 등에 직접 제공하는 기부식품 제공시스템으로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조리 및 가공식품,

신선식품, 빵류 등을 주로 제공

- 2008년말 현재 전국푸드뱅크 1개소, 광역푸드뱅크 16개소, 기초푸드뱅크 264개소 운영 중

### ● 필수약품

(必需醫藥品, essential drug)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韓國國際保健醫療財團,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Dr. Lee Jong-wook Memorial Fund)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 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을 말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

### ● 한부모 가족

(Single parent families)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Welfare facilit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Welfare organization for single parent families)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Welfare counseling center for single parent families)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한센인

(한센人, person who suffers or recovered from Hansen's disease)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한센인입소자

(한센人入所者)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 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등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한센인피해사건

(한센人被害事件)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①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 ②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갯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



### ● 행위별수가제

(行為別酬價制, Fee for service)

보험자 또는 정부가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중 의사가 실제로 제공한 의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 향정신성의약품

(向精神性醫藥品, Psychotropic Substance)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헌혈

(獻血, Blood donation)

헌혈이란 백혈병이나 수술, 사고로 인한 출혈 등 혈액이 부족한 환우들에게 혈액을 기증하는 것으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며, 적혈구, 혈소판, 혈장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 헌혈과 혈장이나 혈소판 등 필요한 성분만을 분리해 헌혈하는 성분헌혈이 있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헌혈환부예치금

(獻血還付預置金, blood products donation return deposit)

헌혈자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헤드스타트

(Head start)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0~5세)발달을 지원함으

로써 빈곤세습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1965년부터 실시된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적 복지 프로그램, 교육·보건·영양·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의 포괄적 아동발달서비스를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Youth help call 1388)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대인관계, 진로상담, 긴급구조, 정보제공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하는 전화이며, 필요시 경찰, 학교, 병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학업, 취업,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현금급여기준

(現金給與基準)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 수준을 의미한다.

### ● 혈액

(血液, Blood)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와 혈장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혈액검체역추적시스템

(Look-Back System)

혈액검체역추적시스템 : 모든 혈액의 검체(소량)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수혈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재검사를 통해 원인 등을 규명하는 체계이다.

### ● 혈액관리업무

(血液管理業務, blood management work)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혈액원

(血液院, Blood center)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2조〉

### ● 혈액제제

(血液製劑, Blood components)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혈액관리법」 제2조〉

### ● 화장품

(化粧品, Cosmetics)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

### ● 화장품전성분 표시제도

(化粧品全成分表示制度)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 문서에 기재·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화학적 합성품

(化學的 合成品, Chemical Synthetic Compounds)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로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 ● 확인조사

(確認調査)

확인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할 기초노령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및 소득·재산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급자조사(시·군·구청장이 실시)와 조사 대상은 같지만 수급자조사의 결과 확인 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환자만족도조사

(患者満足度調査, Patient satisfaction survey)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입원 및 외래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 ● 활동인력 수

(活動人力數, number of active healthcare professionals)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자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해당 면허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수를 말한다.



### ● 효능군

(效能群, Efficacy group)

효능이 같은 성분들의 약제를 말한다.

### ● 효문화

(孝文化, Culture of filial piety)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희귀의약품

(稀貴醫藥品, Orphan drugs)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 ● 1차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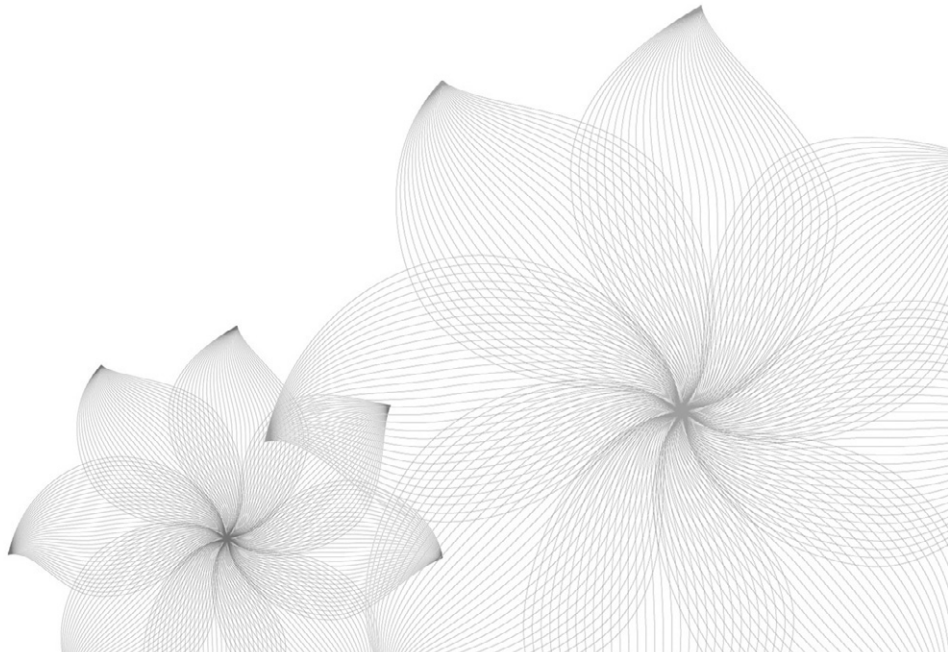
(1次統計)

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수 또는 개체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이다.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四大社會保險情報連繫센터,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Center)

전자정부구현 11대 중점과제사업의 하나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기관이 처리하는 유사업무를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한 창구로서 사회보험 가입자의 서비스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 10월 개소했다.





제3장



A ~ W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아시아·太平洋貿易協定,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FTA와 달리 관세철폐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인하가 목적)

-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ESCAP : Economic &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에서 “방콕협정”이라 부르던 것이 2005.11.2 ESCAP 개발 도상 후원국간 무역협상 관세특허 제3라운드 협정에서 개칭
- 現회원국가(6)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데이터, 음성과 화상 트래픽을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음. 전송할 정보가 있을 때만 정보데이터를 53 바이트의 일정한 크기로 분할해 프레임에 실어 전송

## ● Bandwidth

(대역폭)

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초당 정보량. 단위는 대개 bps(bit per second)이며 100bps이면, 초당 100비트 데이터 전송. 구리선을 사용할 경우 수십 Mbps 까지도 전송 가능. 전화선을 사용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수십 Mbps까지 전송이 가능하나, 전화국의 교환기 등이 대역폭을 64Kbps로 제한하고 있다.

## ● BCG

(Bacille Calmette-Guerin)

결핵예방백신으로 비병원성 BCG균주를 인공 감염시켜 결핵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여 결핵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의 속립성 결핵과 결핵성 뇌수막염 등 중증 결핵 발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 ● Bio cluster

바이오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에 모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사업화,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 정보교류, 자금조달 및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io Marker

생명체 내부에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유발된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주로 의료분야와 환경 감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최근 암, 뇌졸중, 치매 등 각종 난치병을 진단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혈액을 떨어뜨려 나타난 색깔의 변화로 질병을 판단하는 작은 진단 장치로 진단 시간도 짧아 위암, 간암, 대장암 등 각종 질병의 진단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 ● CDSS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료인)에게 진료진단 및 진료지원 업무(물리치료, 주사/약제 관리 등) 수행 시에 진료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 CEPA(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包括的 經濟 파트너십 協定,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 (예 : 한-인도 CEPA)

## ● CRM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업의 현지 고객 및 잠재 고객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관계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데이터를 수집, 동향, 가공, 분석하여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활동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연구개발을 대행해 주는 기업을 말한다.

## ● Data Mart

DW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업무 또는 조직의 분석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의 추출, 여러 데이터의 병합, 요약, 집계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데이터 저장소

## ● Data Mining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체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통계적 방법론

- KDD(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 :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라고도 일컬음
- 규칙 및 패턴발견을 위해 통계학에서 패턴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계량기법을 사용

## ● DB

(Database)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

## ● DBA

(Database Administrator)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 백업, 성능관리, 설치 등 운영 중인 데이터의 관리적인 책임

## ●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집합. DBMS은 사용자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요구를 처리하고 적절히 응답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DDA(도하개발어젠다)

(도하開發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여, GATT시절 포함 9차이자,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개도국들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명칭에 “Development” 포함

## ● 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수의 호스트들의 패킷을 범람시킬 수 있는 DOS(denial of service) 공격용 프로그램을 분산 설치하여 이들이 서로 통합된 형태로 공격 대상 시스템에 대해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기법. DOS 공격은 공격할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무력하게 만들어, 시스템이 정상적인 수행을 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매우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고, 즉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격 방법으로는 smurf, trino, SYN Flooding 등이 있다.

## ● DICOM

(디지털의료영상전송장치,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미국 방사선 학회와 전기 공업회가 합동으로 설립한 ACR/NEMA 위원회(1996년에 DICOM 위원회로 개칭)가 모체가 되어 의료화상전송을 중심으로 정한 규격. 현재는 데이터 보존 규격도 포함되어 있어 표준 규격이 됨. 1993년에 일단 완성된 이 규격에 의해서 의료 화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디지털의료영상전송장치위원회에서 규격을 더욱 강화한다.

## ● DNS Server

(Domain Service Server)

도메인 이름에서 IP 어드레스를 추출하는 역할. DNS 서버는 분신형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DNS 서버에서 IP 어드레스를 알지 못하면 상위의 DNS 서버를 검색. 인터넷을 경유해 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메일 서버 이름을 DNS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 ● DQM3

(데이터품질관리 성숙모형, Data Quality Management Maturity Model)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조직의 현재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해야 할 개선 과제 및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제시

## ● DRM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 Digital Right Management)

각종 디지털 콘텐츠(문자, 음성, 영상, 프로그램)를 암호화하여 발급된 디지털 정보의 원본 확인 기술 및 사용자 인증을 포함한 콘텐츠 유통관리, 대금 결제 기술 등이 포함된다.

## ● DRS

(재난복구시스템, Disaster Recovery System)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내용이 백업 센터에 똑같이 저장되도록 만든 시스템. 천재지변이나 화재, 테러 등의 사고로 인해 전산 센터가 손상을 입어도 데이터 백업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 후 1~24시간 안에 전체 정보를 복구, 무리 없이 정상 운용할 수 있다.

## ● DSS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보건의료 정책입안자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보건기관의 사업기획 및 정책수립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 DW

(Data Warehouse)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제 지향적이며 통합적이고 시계열적이며 비휘발적인 데이터의 모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자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통합데이터 저장고.

## ● DWDM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여러 광 신호를 다른 파장들을 사용하여 한 가닥의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광전송 기술 여러 개

의 신호를 분리된 각기 다른 파장의 광에 실어 보내는 기술.

### ● ECMS

(전자적 콘텐츠관리시스템,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System)

관리하는 대상 콘텐츠인 제품, 관련문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EDI 청구

(電子文書交換, Claims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심사기관 간에 상호 교환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와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표준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0104수신하는 방법을 말한다.

### ● 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 전자적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존 DW(Data Warehouse)를 전자적으로 확장한 모델로 기존 리소스의 유기적 통합, 다원화된 관리 체계 정비, 데이터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의 EDW는 보건기관 업무(보건사업, 보건행정, 진료 및 진료지원) 별로 구성되어 있음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自由貿易聯合,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로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4개국으로 구성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e-Health

(전자건강, Electronic Health)

원하는 국민 모두가 평생 전자건강기록(EHR)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보장 받는다.

### ● EHR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의무기록을 포함한 평생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기관, 국가가 안전하게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의 기기끼리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고, 정보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E-Learning

(전자학습)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즉,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웹 기반의 학습 교육을 의미,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 ● EMR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s)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효과 : 신속한 업무 처리와 인력 및 비용 절감, 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 가능,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 등 < 「의료법」 제23조 >

## ● EMS

(통합관리시스템,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 프로세싱과 네트워크 장비·컴퓨터 운영체제(OS)·응용 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기술 자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기업 전산 인프라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 ● ESM

(통합보안관리,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보안 관리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제 및 운용/관리함으로써, 보안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보안성 향상을 극대화 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합보안관리 체계

## ●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Transportation])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환한 후 다시 적재(전송)하는 일련의 과정  
○ DW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계의 데이터를 추출, 차원(Dimension)에 의해 변환(정제)하여 DW 에 적재(전송)

## ● FMTP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등 전문인력(중간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본선인도가격으로 공장에서 출하가격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료 및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 국내 운송관련 비용 및 보험료(제품가격의 약 0.5%, 약 2%)가 추가된 가격

## ● Frame Relay

(프레임 릴레이)  
고속 데이터 전송용 프로토콜. OSI 7계층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며, 전송 오류 시 전송 지연을 낮추기 위해 재전송 제어를 할애해 데이터 다중화를 실현한 전송방식. 전용회선의 고속의 장점과 패킷 통신의 동시 다지점 접속기능 겸비

## ● FTA(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등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서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194개중 117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FTA 중심의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확산된 것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현상으로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 FTA 협정문(Agreement)  
- FTA 참여하는 당사국을 상호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상품, 원산지, 의약품, 서비스·투자, SPS/TBT 등의 장으로 구성된다.

## ● GCC(걸프협력이사회)

(걸프協力理事會, Gulf Cooperation Council)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1981년 결성), 처음에는 안보협력체의 성격이었으나 FTA수준 경제통합('83년), 관세동맹('03년)으로 발전, 현재는 통화통합('10년)을 진행 중이다.

## ● GPKI

(정부공개키기반구조,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전자정부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교환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시 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또는 행정전자문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로 전자정부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정책 및 최상위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 ● Health-Care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 및 관리를 의미하며 의학요법, 간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는 건강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 ● HIV 감염인 / AIDS 환자

(HIV感染者, An HIV positive person)

- HIV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항체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 AIDS 환자 : HIV 감염인 중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위중한 기회감염, 악성종양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

## ● HTLV

(인체 T 림프영양성 바이러스, Human T-Lymphotropic Virus)

수혈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감염시 일부에서 백혈병, 신경학적 질환 등을 일으킴.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 HTTP

(Hyper-Text Transport Protocol)

문서 텍스트의 비순차적 검색을 일컫는 하이퍼

텍스트(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만듦)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는 이미 정의된 링크나 사용자가 생성한 링크를 사용해 관련된 문서 내용을 자유롭게 따라 갈 수 있다.

##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143개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ICSID 회원국)

## ● IDS

(침입탐지시스템, 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탐지시스템으로 방화벽과 함께 활용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말함. 일반적인 침입탐지시스템은 방화벽과 같이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단계를 넘어 외부 침입에 의해 방화벽이 해킹된 후 침입사실을 탐지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 ● IP

(Internet Protocol)

인터넷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프로토콜. 인터넷은 많은 지역 네트워크의 호스트 컴퓨터를 경유하면서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 중에 통신되는 정보가 자신의 목적지를 알리면서 호스트를 거쳐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한 것임. 보통 TCP/IP라고 하는 것처럼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

## ● IPS

(침입방지시스템,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네트워크에서 공격 서명을 찾아내어 자동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중단시키는 보안 솔루션. 수동적인 방어 개념의 침입 차단 시스템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IDS)과 달리 침입 경고 이전에 공격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둔, 침입 유도 기능과 자동 대처 기능이 합쳐진 개념의 솔루션. 해당 서버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따른 정보 유출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가자의 비정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 ●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128bit의 큰 주소길이에 의한 주소수 확장과 Qos, 실시간,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의 프로토콜

- IPv6의 특징 : 이동성, 보안성, 주소자동 설정, 멀티 호밍, 기능의 다양성, 풍부한 주소 공간 제공, 플러그에 플레이 방식 자동 네트워킹, 서비스 품질 보장, 단말 또는 네트워크의 이동성 제공
- IPv6 기술현황 : 정보가전, 무선 인터넷, 이동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응용환경에 접합한 멀티미디어형, 유무선 통합형 단말에서 널리 사용될 전망

### ● ISP

(정보화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전략의 수립이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 KBR

(지식기반저장소, Knowledge Based Repository)

정보이용자에게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저장소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보건기관 업무에 발생하는 실적 및 업무 통계를 제공하는 저장소가 있음

### ● KMS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 ● KPI

(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목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 ●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TCP/IP 위에서 디렉터리 서비스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응용 프로토콜로 인증을 위한 서비스에 주로 사용하며 디렉터리는 논리, 계급 방식 속에서 조직화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객체들의 모임.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전화번호부 (telephone directory)가 있는데 가나다순 일련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마다 전화번호와 주소 포함.

### ● LP(현지 주재 요건) 부과 금지

(Local Presence : 現地 駐在 要件) 賦課 禁止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

## ● MA(시장 접근) 보장 의무

(Market Access ; 市場 接近) 保藏 義務

공정한 시장접근 보장 위해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 의무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거래가액 또는 자산 제한, ③ 제공행위 수 또는 산출량 제한, ④ 자연인수의 제한, ⑤ 법인이나 합작회사의 형태 제한, ⑥ 외국인 지분 제한

## ● MERCOSUR(남미 공동시장)

(南美 共同市場, Mercado Comun del Cono Sur=Southern Cone Common Market)

남미국가들의 불완전한 관세 동맹으로, 품목 90% 무관세 자유무역 실시

-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페루(FTA 체결국)
- 상기 6개국 면적 : 1,460만km<sup>2</sup>(중남미 전체 면적의 71%)
- 인구 : 2.6억(중남미 전체 인구의 51%)

## ● MFN(최혜국 대우) 보장 의무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最惠國 待遇) 保藏 義務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와 동등 대우를 다른 협정당사국에 부여하는 의무(국가 간 차별금지)

## ● Modalities(세부원칙)

(細部原則)

자유화의 세부원칙으로서, 협상결과로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관세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공식

- 예) 초음파영상진단기(HS code 9018 12

0000)에 대해 FTA 발효 7년 후 관세율 0%를 약속

## ● Mode 1(국경 간 공급)

(國境 間 供給, cross-border supply)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 등의 수단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방식

- 예) 원격의료(telemedicine),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통

## ● Mode 2(해외소비)

(海外消費,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자 소재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

- 예) 의료관광(medical tourism)

## ● Mode 3(상업적 주재)

(商業的 駐在,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공급자 소재국에서 수요자 소재국으로 자본이 이동하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수요자 소재국에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 예) 병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establishment of and investment in hospital)

## ● Mode 4(자연인 이동)

(自然人 移動, movement of natural person)

서비스 공급자인 자연인이 소비자 소재지국으로 직접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예: 의사, 간호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분야의 경우, 의사 등 우리나라 면허 없이는 국내 활동이 불가한 바, 이러한 업종에서는 면허/자격을 국가간에 상호 인정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Mode 4 형태의 서비스 공급은 불가능함.

### ●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非農產物 市場接近,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WTO/DDA협상 분야들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약자로 전 세계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의 관세감축 내지 철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상으로 DDA 전체협상이 시작된 이후, 비농산물 분야도 활발하게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감축 폭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가 심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 ●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사실 IP주소를 공인 IP주소로 바꿔주는데 사용하는 통신망의 주소 변환기.

### ● NPKI

(국가공개키기반구조,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전자인증 체제. 일반 국민 사용. 국가 공인 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곳.

### ● NT 보장 의무

(National Treatment : 內國民 待遇) 保藏 義務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 ● OCS

(처방전달시스템, Order Communication System)

의료, 원무, 일반 업무 등 의료기관 업무에서 발생된 정보를 전자화하여 해당 진료부서로 통신 전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접수, 진료, 검사 및 수납 등의 모든 업무정보를 각 부서에서 공유하여 모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 ● ODS

(Operational Data Store)

즉시성 조회의 필요에 의하여 구축되는, 통합된 운영계 데이터로써 최신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DW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영역.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간에 경제성장, 고용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선진국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당초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경제 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편된 기구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으며 전체 회원국은 30개국이다.

### ●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과정.

## ● Oracle

(오라클)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로 인터넷 서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포스트 PC 시대에 핵심기술로 부상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 ● OTP

(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

로그인할 때마다 그 세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보안 시스템.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해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패스워드 도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일반 패스워드와는 달리 단방향 암호 기반의 해시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며, 그 세션이 끝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안전한 기능이다.

## ● PACS

(영상정보관리시스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방사선 장치를 통하여 진단한 영상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저장하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함께 각 단말기로 전송·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 ● PHCDSS

(개인별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체계, Personal Health Care Decision Support System)

자가측정관리 도구 등으로 개인의 현 건강상태 진단, 과거 진료정보를 이용한 개인의 질병유무와 건강상태 예측, 개인별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추천 등을 통해 각 개인이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 PHR

(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정보화를 통하여 개인별로 온라인에서 얻은 필요한 정보 및 많은 자원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정확한 병력이나 건강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 ● POCS

(고객접점진료서비스, Point Of Care Service)

현장 중심의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주민 건강관리 지원, 정보제공/수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적용하여 입력 작업 효율화 향상.

## ● PR(이행의무) 부과 금지

(Performance Requirement : 履行義務) 賦課 禁止

국내산업 보호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

① 수출, ② 국산품 조달, ③ 수입의 수출에의 연동, ④ 국내 판매의 수출에의 연동, ⑤ 기술이전, ⑥ 생산지를 국내로 한정

## ● R/O(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市場開放要請 및 提案方式, request/offer)

양국간(FTA) 국가간(WTO)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 진행 방식.

## ● ROUTER

다른 기종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

## ● SAM

(Sequential Access Method)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찾아가면서 원하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기법.

## ● SPS/TBT 통보절차

(SPS/TBT 通報節次)

위생 및 검역(SPS)제도를 제정·개정하기 이전에 이해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전인지 및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WTO에 통보.

기술에 관한 무역장벽(TBT)에 해당하는 기술규정 등에 대한 제정·개정하기 이전에 이해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전인지 및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WTO에 통보.

## ● SQL

(구조화 질의어, Structured Query Languag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의 검색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과 수정,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를 위해 고안된 컴퓨터 언어. SQL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갱신하기 위한 표준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SQL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 ● SSL

(Secure Sockets Layer)

인터넷 상거래시 필요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유지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 보안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의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간의 지불정보보안에 관한 프로토콜.

## ● SSO

(Single Sign On)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이 각각의 회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개발된 방식으로, 개인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물론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사이트마다 일일이 기록해야 하던 것을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므로 불편함이 해소되며, 기업에서는 회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 마케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Standstill(현상동결)

(現狀凍結)

협상시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 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약속으로, 협정 발효된 이후 예외조항 추가 등재를 금하는 방식으로 미래 신중서비스 협정대상에서 제외.

## ● Traffic

(트래픽)

특정 전송로 상을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정보(Data)의 양.

## ●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貿易關聯 知的財産權 協定,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IPR)보호를 위한 포괄적 다자국 국제규범을 규정한 WTO의 부속협정문을 말한다.

## ● u-Health Care

(Ubiquitous Health Care)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전국 각지 병·의원과 u-헬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치의에 의한 맞춤형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도서나 산간 오지 지역민들이 화상시스템을 갖춘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병원선·이동보건차량이나 대형종합병원의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 UN 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UN에 의한 산업분류로서 FTA 서비스 양허안이나 유보안 작성시 사용(예 : CPC 9312 는 ‘의료 및 치과서비스’ 를 의미)

## ● UN아동권리협약

(UN兒童權利協約, CRC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

## ● UPS

(무정전 전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전원에 관련된 장애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정전압과 정주파수와 정현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신속하면서도 무리 없이 종료해 전원 문제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순간정전, 불의의 정전, 전원전압의 변동, 전원잡음 등 각종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 공급.

## ● Validation

공정, 시설 또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 ● VPN

(Virtual Private Network)

터널링(Tunneling) 기법을 사용해 공중망에 접속해 있는 두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마치 전용 회선을 이용해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가상 네트워크.

## ● WAS

(Web Application Server)

웹과 기업의 기간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면서, 웹 기반 분산 시스템 개발을 쉽게 도와주고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 ● WSDL

(웹서비스기술언어,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비즈니스 서비스를 기술하여 비즈니스들끼리 전자적으로 서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장성 생성언어(XML)기반의 언어.

## ● WTO(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1947년 창설한 GATT의 법적 성격 부재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결과 1995.1.1 설립, 회원국은 153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위치, 기본목적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 및 평화증진 도모.

### ● WTO 기술장벽(TBT) 위원회

(WTO 技術障壁(TBT) 委員會)

WTO 일반교역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로서, 안전성(위생)과는 관련이 없는 기준·규격의 적합성에 대한 규정이 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려함.

식품 표시,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규정이 대상에 포함되며 매년 3회 정례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함.

### ● WTO 위생검역(SPS)위원회

(WTO 衛生檢疫(SPS)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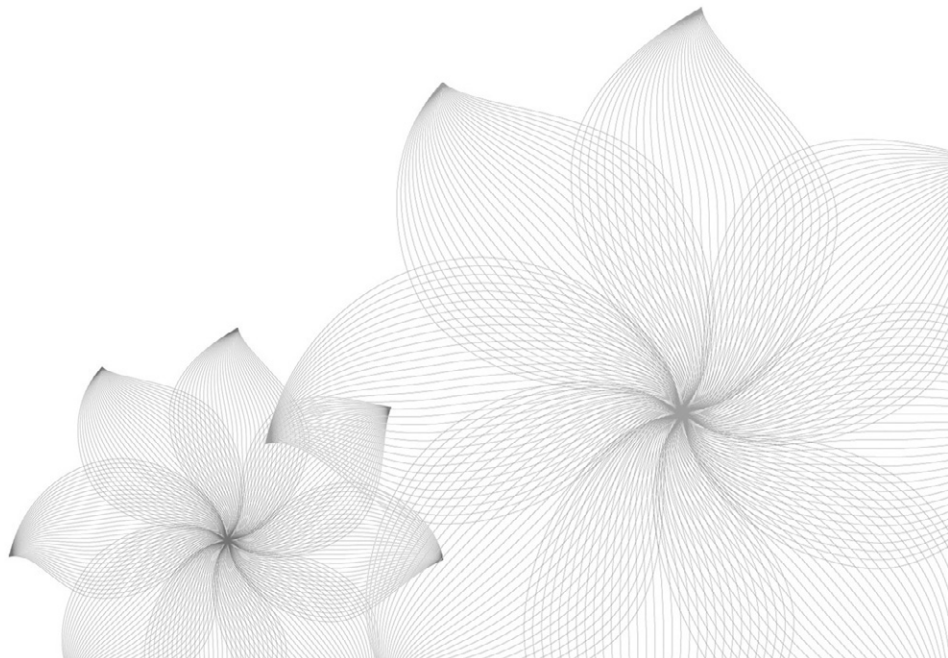
WTO 일반교역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로서, 인

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검사(inspection)와 검역(quarantine) 규정이 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려, 주요의제로는 양자간 무역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특정무역우려사안과 협정의 주요 사안별 논의가 있다. 매년 3회 정례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 ● WTO 통일원산지 협상

(WTO 統一原產地 協商)

전 세계 원산지규정의 단일화·통일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보건상품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



1. 본 서적은 보건복지가족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에 수록된 정책용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2. 용어는 한글(가나다순), 숫자, 영어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용어명은 한글, 한자, 영문을 병기하였으나, 영문명은 용어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영어용어명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http://www.mw.go.kr))의 「정보마당」에서도 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수록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 (☎ 02-2023-71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용어 해설집

**발행처** | 보건복지가족부  
**발행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편집인** | 기획조정실장 최원영  
**편집참여자** | 정책통계담당관 신준호  
                  담당사무관 변루나  
                  담당주무관 공헌식  
**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쇄** | 대승사  
**기획** | 시선  
**발행일** | 2009년 9월

**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 | 02-2023-7161~8  
**팩스** | 02-2023-7171  
**홈페이지** | <http://www.mw.go.kr>